

산림분야 종자업의 이해

목 차

I. 종자업에 대한 일반 사항

1. 종자	3
2. 종자산업	3
3. 품종	3
4. 종자업	3
5. 종자업자	3
6. 산림분야 종자업 영위를 위한 절차	3

II. 수입요건확인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10
------------------------------------	----

III. 수입적응성시험

1.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	27
2.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30
3.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요청	34

IV. 종자관리사 등록·변경·재발급

1. 종자관리사 등록	39
2. 종자관리사 등록사항 변경	43
3.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46
4. 종자관리사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	49

V. 종자업 등록 · 변경 · 재발급

1. 종자업 등록	53
2.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	59
3.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	62
4. 종자업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	65

VI.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변경신고 및 재발급

1.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71
2.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변경신고	99
3.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103
4.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취소	107

VII. 품질표시

1. 품질표시에 대한 사항	113
----------------------	-----

VIII.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에 대한 사항	119
2. 과태료에 대한 사항	120

IX. 각종 서식

1.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125
2.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품종특성, 육성과정 및 사진 포함)	126
3.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서	129
4.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130

5.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31
6.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133
7.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135
8. 확약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 ..	136
9.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37
10. 종자업 등록신청서	138
11.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139
12. (종자업, 육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40
13.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141
14.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료 제출 확약서	142
15.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143
16.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44
17.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145
18. 수수료 면제신청서	146

X. 별표

1. 작물별 보관·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149
2. 수입요건확인·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	166

I . 종자업에 대한 일반 사항

1. 종자

『종자산업법(2017. 6. 28 시행)』 제2조에 따라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품종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종자업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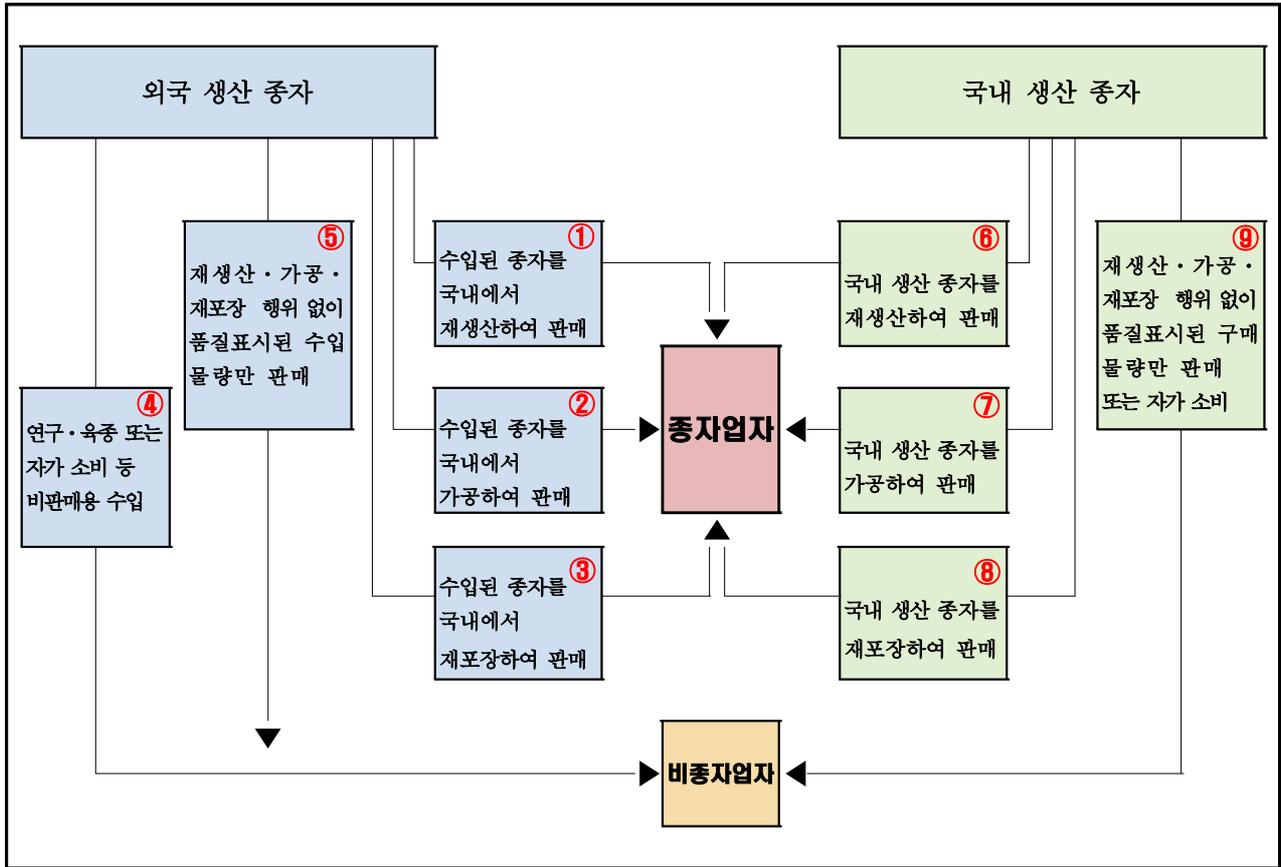
5. 종자업자

“종자업자”란 상기 정의된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분야 종자업 영위를 위한 절차

산림 분야 종자업자가 종자업 영위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① 수입요건확인, ② 수입적응성시험, ③ 종자업등록, ④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⑤ 품질표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자업자의 유형(=종자업 경영의 유형), 작물, 품종에 따라 필요 절차 또는 서류 등이 가감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방법은 해당 절차의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대표적 종자업의 유형 >



< 종자업 영위를 위해 유형에 따른 필요 절차 >

필요 절차	종자업자 유형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⑦	⑧	⑥+⑦+⑧	⑨
수입요건확인 (“표고, 목이, 복령,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의 종자만 해당)	▲	▲	▲	▲	▲	▲	X	X	X	X	X
수입적응성시험 (“표고, 목이, 복령,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의 품종의 종자만 해당)	▲	▲	▲	▲	X	▲	▲	▲	▲	▲	X
종자업등록	O	O	O	O	X	X	O	O	O	O	X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O	O	O	O	X	O	O	X	X	O	X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O	O	O	O	X	O	O	O	O	O	O

※ “O” =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X” =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이행해도 무방함),

“▲” =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행해야 하는 절차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 식물체를 말한다.

⌘“육묘업자”란 상기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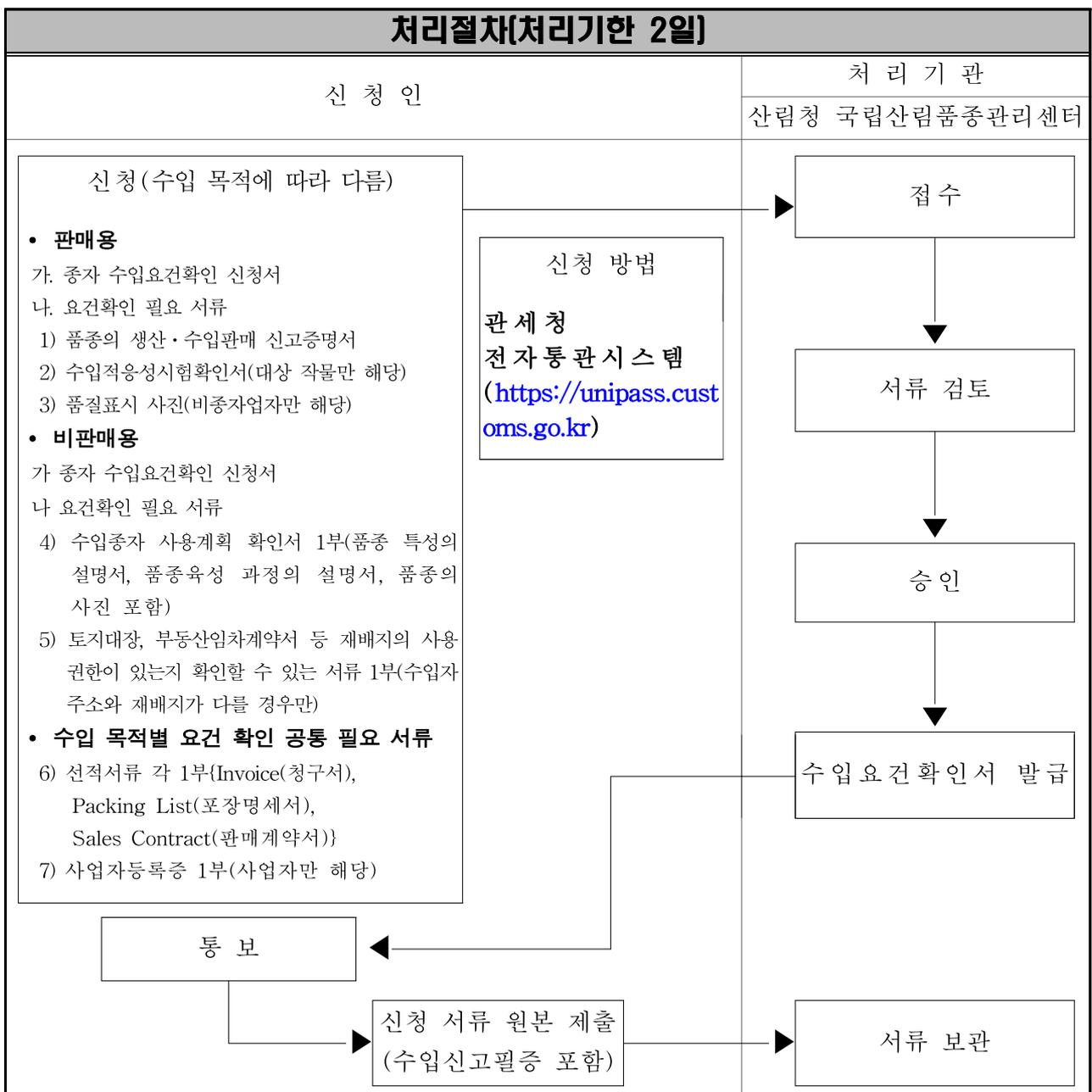
⌘종자산업법에 따른 본 책자에 언급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한다. 단 ㉠ 학명, ㉡ 품종명칭, ㉢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는 영어로 쓸 수 있으며 ㉠ 학명과 ㉣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II. 수입요건 확인

□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산림용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요강』 제30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의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가.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및 “나. 수입 목적(판매용, 비판매용)에 맞는 요건확인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 목적별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고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수입요건확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43-850-3371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의 수입요건확인 처리 절차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이용하여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라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를 진행하여 “가. 종자 수입요건 확인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한 후 “나. 수입 목적(판매용, 비판매용)에 맞는 요건 확인 서류”를 팩스(043-850-3390) 등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수입요건 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재전송해야 한다.

☞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검역불합격 등의 이유로 수입요건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043-850-3390)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수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입요건이 확인되어 통관 완료 후에 수입요건확인 신청 관련 서류 원본은 반드시 수입신고 필증과 함께 우편(우27495,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팀 수입요건 담당자)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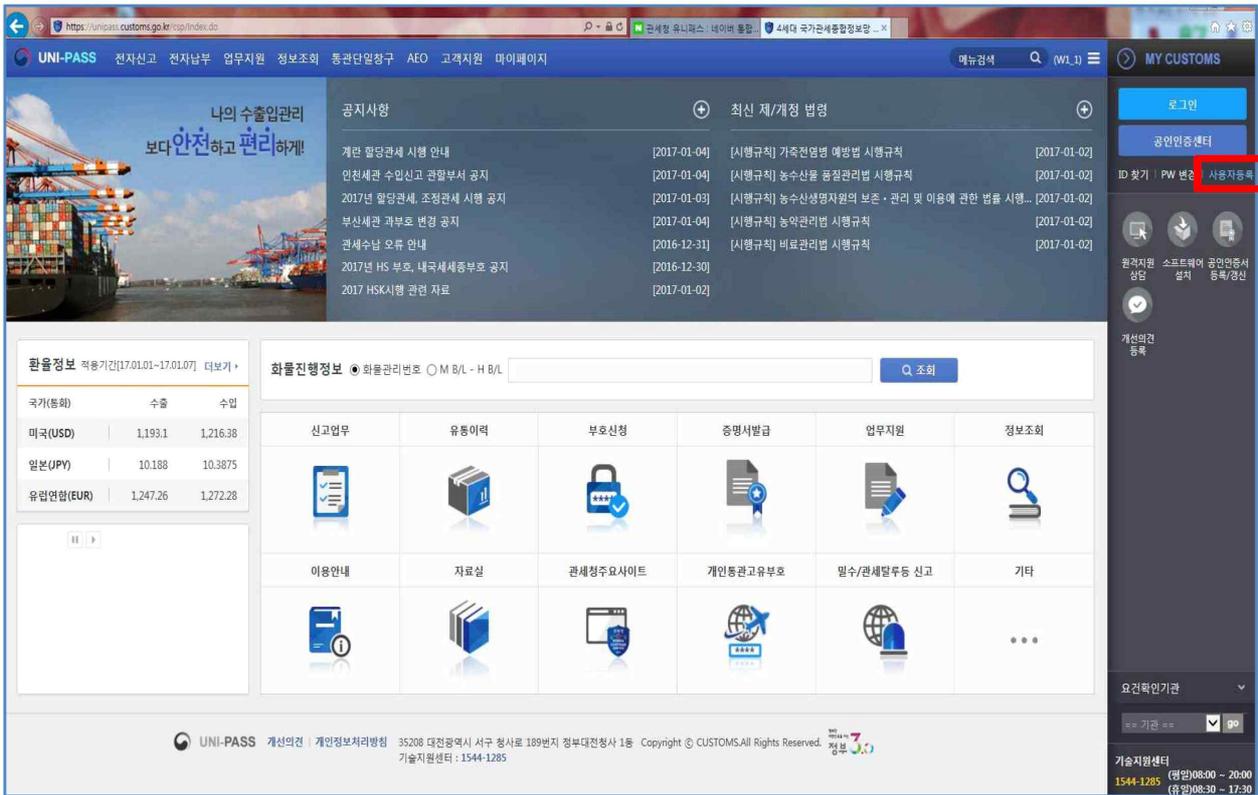
작물 분류	대 상
버섯(3)	표고, 목이, 복령
약용작물(7)	사삼 ¹⁾ , 시호, 오가피 ²⁾ , 천궁, 하수오, 백출 및 창출 ³⁾ ,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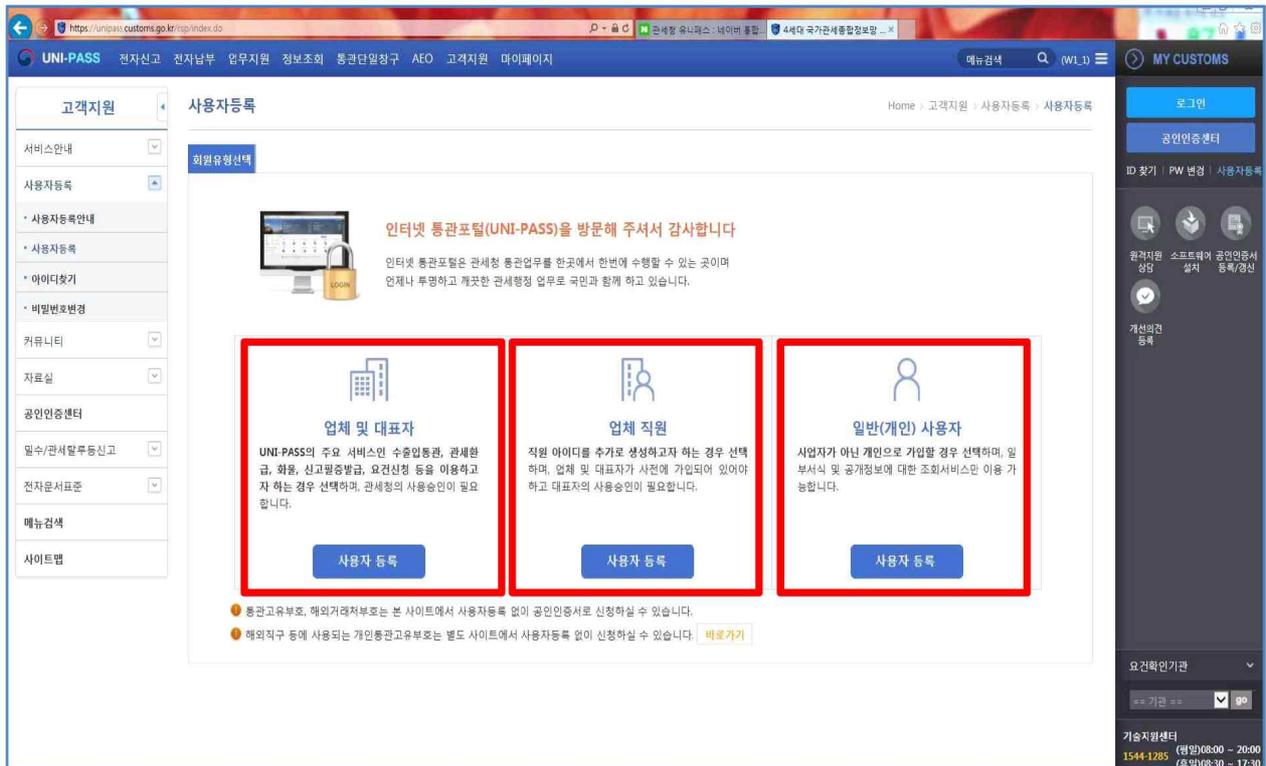
1) 사삼 : 잔대, 2) 오가피 : 오갈피나무, 3) 백출 및 창출 : 삼주(당삼주 포함)

가.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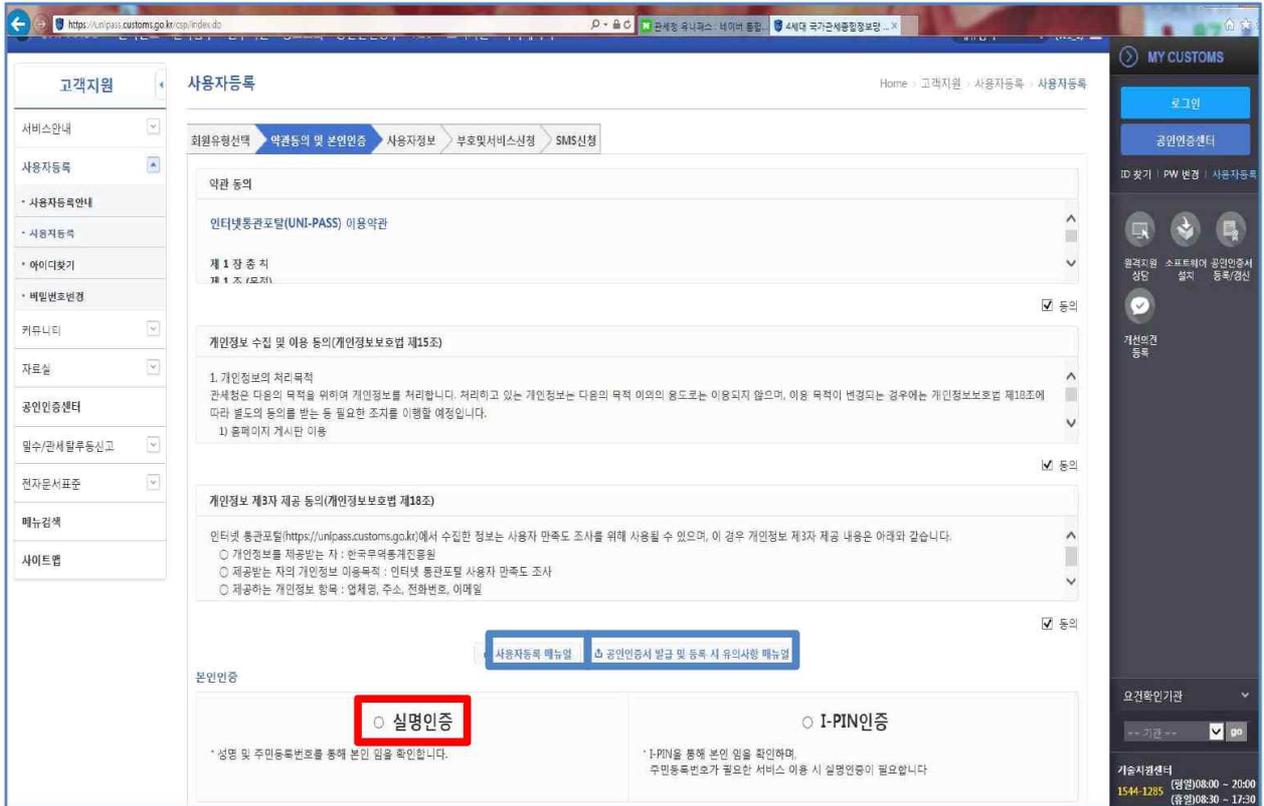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사용자 등록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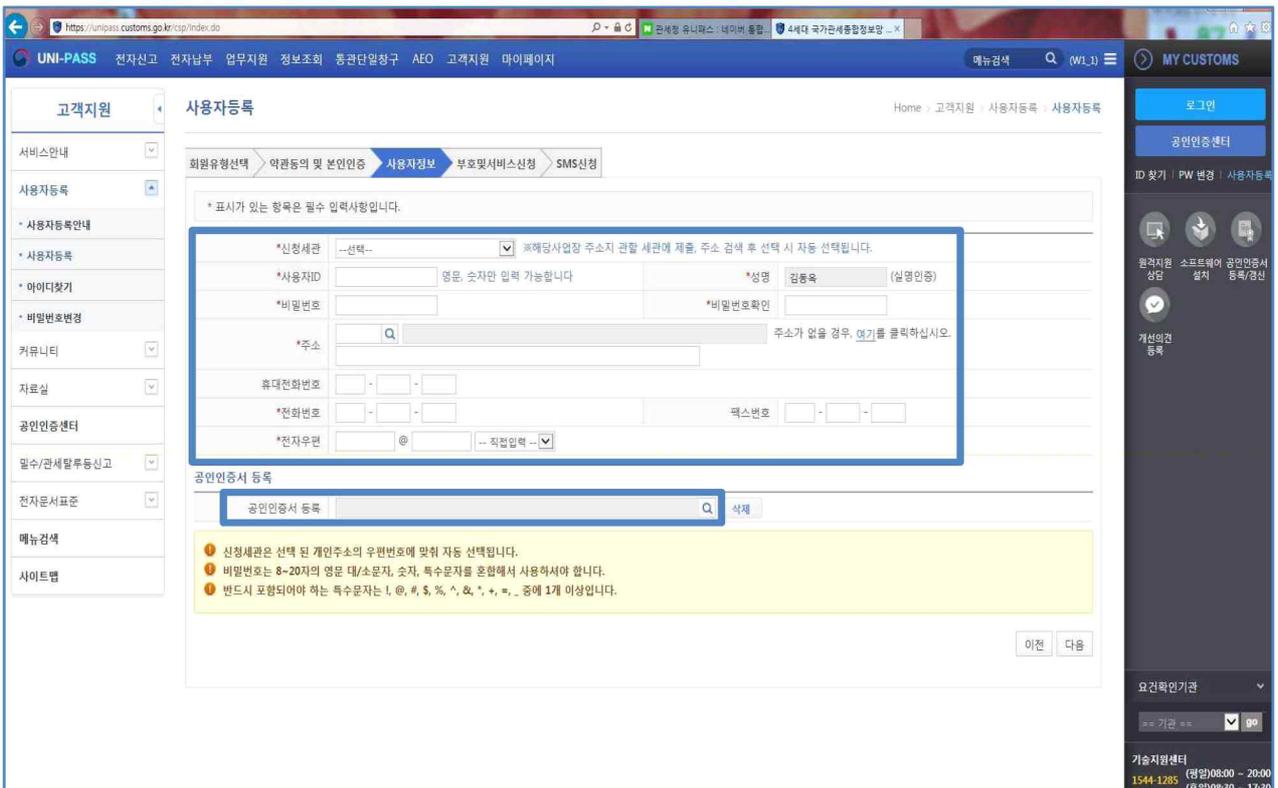
2) 회원유형선택 : 해당하는 회원 유형의 사용자 등록을 클릭



3)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각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후 다음 버튼 클릭
 ※ “각 약관 내용, 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시 유의사항 매뉴얼”은 필독



4) 사용자 정보 :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다음 버튼 클릭



5) 부호 및 서비스 신청 : 해당 항목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사용 문의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

The screenshot shows the '부호 및 서비스 신청' (Number and Service Application) page on the UNI-PASS website.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a sidebar with service categories,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instructions and a form.

부호 및 서비스 신청

[업무별 고음부호 등록]
본 사이트에서 업무별 고음부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입할 부호를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래에서 정해지는 고음부호를 선택하시면 기입할 부호가 표시되며, 사용자등록되는 정보수령 완료 시 본 사이트의 부호가 등록됩니다.
단, 기입할 부호는 부호가 없으실 경우에는 접두어만 등록하거나 부호 앞에 (신청) 또는 (해당정보)를 표시합니다.

- 부호 앞에 (신청)이 표시되는 경우
 - 입력정보를 기입하셨을 후에 시 기안승인(고음부호) 완료된 (부호)을 소로 표시된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 입력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고 신청한 경우 정상입니다.
 - 관세청에서 사용자등록되는 정보수령을 승인하면 해당 부호가 자동으로 발급(등록)됩니다.
- 부호 앞에 (부호)로 표시되는 경우
 - 입력정보를 기입하셨고 (고음부호)가 없으면 (부호)을 소로 표시된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 입력정보를 기입하셨고 (고음부호)가 있으면 본 사이트에서 기입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부호(개인부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신고인부호(업체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록(세관승인필요)

신청	서비스	비고
<input type="checkbox"/>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탈신고신청	

서비스 등록(자동승인)

신청	서비스	비고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일반)	
<input type="checkbox"/>	물류서비스(일반)	

[서비스 선택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등록(세관승인필요)는 세관 승인 완료 후 정보 변경으로 추가 시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항목입니다.
2.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탈신고 서비스 신청하려면 신고인부호(개인등록번호)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고인부호를 신청하려면 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업무별 고음부호가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등록(세관승인필요)을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5. 서비스 등록(세관승인필요), 서비스 등록(자동승인)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 수출입신고번호 발급은 정보제공, 운영서비스 2가지만 선택됩니다.

6) SMS 신청 : 해당 항목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SMS 신청' (SMS Application) page on the UNI-PASS website.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a sidebar with service categories,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instructions and a form.

맞춤형정보 수신 신청

안내구분	안내내용	수신재질	
		SMS	이메일
업무안내	<input type="checkbox"/> 현재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심사 <input type="checkbox"/> 조사 <input type="checkbox"/> 보세화물(구적) <input type="checkbox"/> 환급 <input type="checkbox"/> 여행차류대행 <input type="checkbox"/> 미사화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홍보	<input type="checkbox"/> 정책제출 <input type="checkbox"/> 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행사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신여부 선택시, 관세청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등록, 수정 시 마지막 단계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세관에 승인 요청이 됩니다.

7) 로그인 → ① 통관단일창구 → ② 요건신청 → ③ 신청서검색란(산림청 입력) → ④ 검색

UNI-PASS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지원 정보조회 **통관단일창구** AEO 고객지원 마이페이지

Home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요건신청

신청서작성

공지사항
총 4 건

No	기관명	제목	게시 시작일자	게시 종료일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신고기관 변경안내 (2017.01.01 ~)	2016-12-29	2017-01-13
2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서신변경안내(2017.01.03-)	2016-12-28	2017-01-13
3	한국기계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서 작성 시 필수검증 오류 처리안내	2016-04-27	9999-12-31
4	한국외국어산업협회	수입요건검토사항 안내	2016-04-24	9999-12-31

신청서검색 신청명 3 Q 4

총 23 건

No	기관명	신청서명	전자제출	변경코드	비고	내의신청서 등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주)동원약품식약	환약제조업자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수출식품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수출감사장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미소축산물포장검사신고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식품안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8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출축산물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입검역물운송물본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출축산물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출물류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국립중앙도서관	비수출수입자대의신청서국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 클릭

UNI-PASS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지원 정보조회 통관단일창구 AEO 고객지원 마이페이지

Home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요건신청

신청서작성

공지사항
총 4 건

No	기관명	제목	게시 시작일자	게시 종료일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신고기관 변경안내 (2017.01.01 ~)	2016-12-29	2017-01-13
2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서신변경안내(2017.01.03-)	2016-12-28	2017-01-13
3	한국기계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서 작성 시 필수검증 오류 처리안내	2016-04-27	9999-12-31
4	한국외국어산업협회	수입요건검토사항 안내	2016-04-24	9999-12-31

신청서검색 신청명 Q 조회

총 1 건

No	기관명	신청서명	전자제출	변경코드	비고	내의신청서 등록
1	신청명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관장확인대상물품조회

9) 공통사항 : 각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저야합니다.

10) 품목사항 : 각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고 전송 클릭하면 신청 완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저야합니다.

- 11) 신청 후 수입 목적별 요건 확인 서류 사본을 팩스(043-850-3390) 등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팀에 제출해 주시면 접수 대기 → 접수 완료 → 세관접수통보 → 통관결과통보 순으로 서류처리가 진행된다. 세관접수통보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청서처리현황' (Application Status) page on the UNI-PASS portal. The page includes a search area with filters for application date (2017-01-05 to 2017-01-05), agency selection, and various application numbers (신청번호, 접수번호, 품목코드, B/L, 화주상호, 서식구분, 집중번호, 처리상태분류, 화물관리번호, 해외업체상호). A table at the botto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search results. The table has columns for selection, No., 서식명 (서식명, 기관명, 지원명), 신청번호, 접수번호, 승인번호, 품목코드, B/L, 화주상호, 신청일자, 집중번호, 처리일시, 해외업체상호, and 처리상태.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with a message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search results found).

나. 수입 목적(판매용, 비판매용)에 맞는 요건확인 필요 서류

수입 목적이 판매용일 경우, 수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서류는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2)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만 해당)”, “3) 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6) 선적서류 각 1부[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등]”, “7)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비판매용일 경우, 필요 서류는 “4)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1부(품종 특성의 설명서,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서, 품종의 사진 포함)”, “5) 토지대장, 부동산임차계약서 등 1부(주소와 재배지가 다를 경우만)”, “6) 선적서류 각 1부[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사업자만 해당)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71”쪽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후 교부받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만 해당)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산림용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일 경우만 해당하며 “27쪽”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3) 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비종자업자가 종자의 재생산·가공·재포장 행위 없이 품질표시된 종자를 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113쪽”에 안내된 내용에 맞게 종자를 포장한 포장 단위별로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4)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비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126”쪽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서식의 각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종특성의 설명은 “82”쪽,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은 “80”쪽, 품종의 사진은 “84”쪽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상호 및 성명(대표자) : 홍길동버섯(홍길동) 인인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0000. 00. 00. 전화번호 : 000-0000-0000

주 소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도로명 주소 기입)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0(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기입)

본인이 00년 00월 00일 수입하는 종자(거래품명 : 버섯종균, 작물명 : 표고, 품종명 : 0000)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이 종균을 유·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도착 예정연월일, 거래품명(거래품명, 작물명, 품종명) 기재

1. 용도 : 시험용 · 연구용 · 자가소비용 · 기타() * 해당사항 체크

2. 수입종자 사용계획

종균사용자	시험 · 연구 · 재배 장소	전화번호	재배면적(m ²)	소요량
홍길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000-0000-0000	000m ²	nw : kg gw : kg
합 계				PCS

※ 상기 수입종자 사용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민 ·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 붙임 1. 시험 · 연구계획서(시험 · 연구용의 경우에 한함) 1부.
 2.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부.
 3. 품종사진 1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 품종의 특성

작물명 : 표고

품종명 : 엘808(L808)

품종특성 : 단생 자실체로 중대형의 반구형으로 자라며 기형이 적게 발생하고 질은 갈색으로 색깔은 가운데부분이 더 짙게 나타나며 육질은 단단합니다. 배양의 최적온도는 15 ~ 22℃ 이고, 최저습도는 55%, 약간의 산란광을 필요로 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서 재배가 필요합니다.

※ 배양기간 · 버섯의 형태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품종의 육성과정

작물명 : 표고

품종명 : 엘808(L808)

육성과정 : 중국 절강성 려수시 임업과학연구원에서 해당지역의 야생 표고에서 버섯의 형태와 발아가 양호한 균주를 분리하여 재번식에 성공시킨 종고원성 표고버섯으로 중국 국가인증번호 2008009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리자오 일조진고생물과기유한공사에서 엘808품종 원균을 배양관리하여 배지주입용 종균을 생산관리중입니다. 해당회사에서 참나무톱밥 78%, 밀기울 20%, 설탕1%, 석회분 1%, 함수율 55%로 배합하여 세로 15cm, 길이55cm 비닐 봉투에 담아 100℃로 26시간 상압살균, 종균주입 후 100 ~ 120일의 배양기간을 거쳐 갈변 처리된 상태의 톱밥배지입니다.

※ 품종의 육성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 접종배지의 모균주(부모 품종)
- 접종배지의 조성성분(톱밥 80%+밀기울 20% 등)
- 톱밥배지 제조 지역 및 국가 등

<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품종의 사진) 작성 예시 >

품 종 사 진

1. 근경사진



2. 원경사진



※ 특성발현이 잘 나타난 상태 촬영(가장 많이 생육된 장면)

5) 토지대장, 부동산임차계약서 등 재배지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 주소와 재배지가 다를 경우만)

비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의 주소(사업자등록증의 주소 포함)와 재배시설의 소재지 주소가 다르다면 신청자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또는 신청자가 임차했음을 증명하는 부동산임차계약서 등 해당 재배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선적서류 각 1부

판매용 및 비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선적서류[Invoice(청구서),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7) 사업자등록증(사업자만 해당)

판매용 및 비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자가 개인이라면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Ⅲ. 수입적응성시험

□ 「종자산업법」 제41조, 「종자관리요강」 제3절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예규 제17호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인 산림용 작물의 종자를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종에 대한 수입적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의 품종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품종의 수입적응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가.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서”를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확인결과, 수입적응성시험이 인정되지 않은 품종이라면 국내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품종이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품종이라면 해당 품종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에 2.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다.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라. 재배시험실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마.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약, 3.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바.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재배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43-850-3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종자업자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이 신청이 되어 있거나 수입적응성시험 중에 있는 품종은 신청할 수 없다.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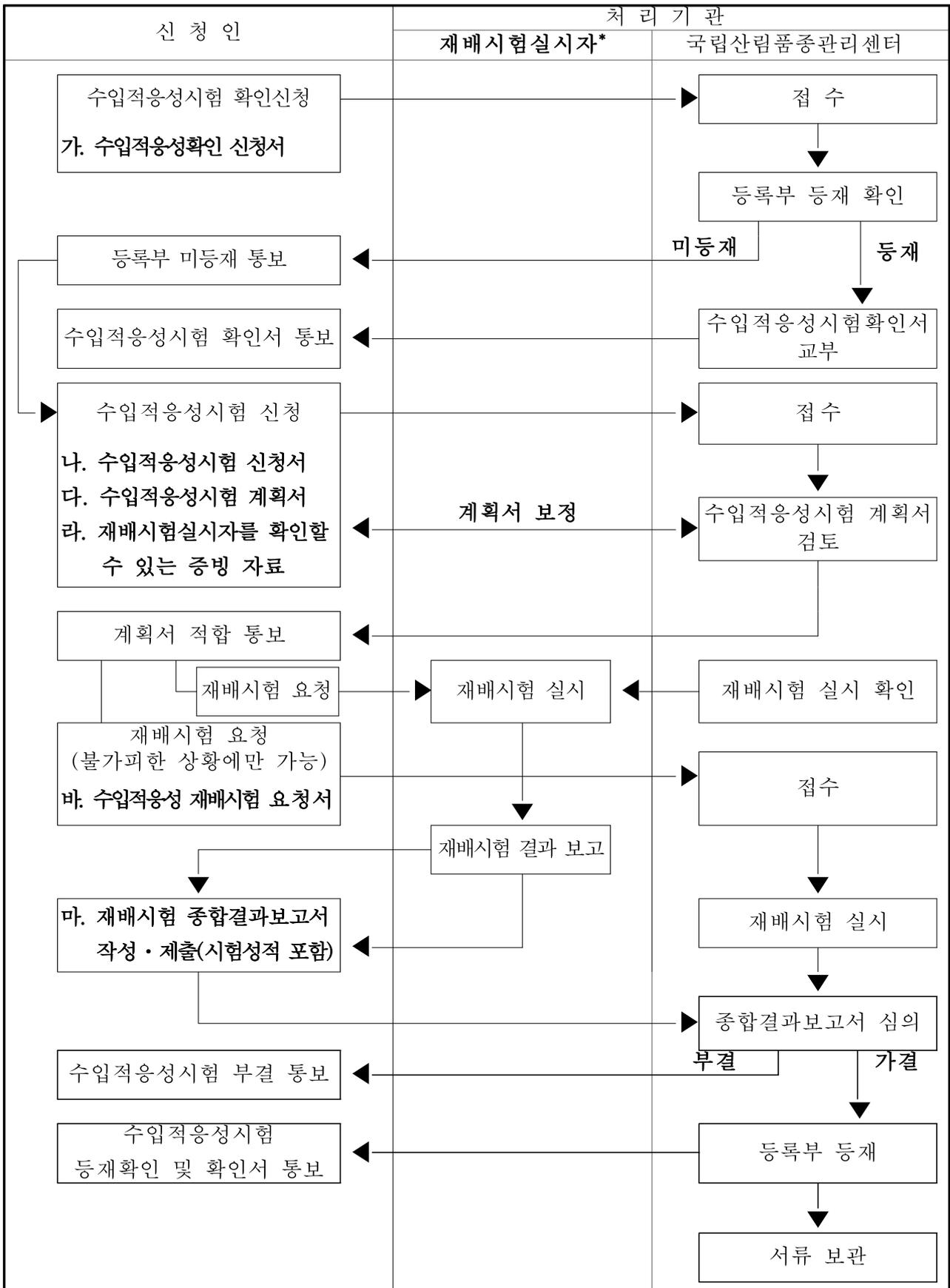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 분류	대 상
버섯(3)	표고, 목이, 복령
약용작물(7)	사삼 ¹⁾ , 시호, 오가피 ²⁾ , 천궁, 하수오, 백출 및 창출 ³⁾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1) 사삼 : 잔대, 2) 오가피 : 오갈피나무, 3) 백출 및 창출 : 삼주(당삼주 포함)

□ 수입적응성시험 절차 흐름도



*재배시험실시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제외하고 재배시험을 할 수 있는 자로 33쪽 참고

1.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수입적응성 확인대상품종	⑥품종명칭	⑦육성자	2)
	⑧등재번호	⑨등재일자	
<p>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10px; margin: 2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3)</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div> <p>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귀하</p>			

가.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개인의 경우 신고증명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법인은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외국 주소{(27495)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법인 명칭”란에는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법인(영농조합법인 국립산림, 농업회사법인 품종관리 등), 외국 법인{Center Inc.(센터 인코퍼레이션), Center co., Ltd.(센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등)}]

-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한다.

[예시 - 010-1234-1234, 01012341234, 043-123-1234, 0431231234 등]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대상 품종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품종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품종명칭”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등]

- “육성자”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품종을 실제 육성·개발한 육성자를 적어야 한다. 육성자를 모르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등재번호”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등재목록에 등재된 번호를 적어야 한다. 단, 등재번호를 모르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시 - 05-01-2017-001 등]
- “등재일자”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등재목록에 등재된 일자를 적어야 한다. 단, 등재일자를 모르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시 - 2017. 1. 1 등]

3)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내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2)
	품종의 명칭
	육성자의 성명
	품종의 주요 특성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다	첨부서류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1부	수수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 품종당 5만원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개인의 경우 신고증명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법인은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외국 주소{(27495)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법인 명칭”란에는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법인(영농조합법인 국립산림, 농업회사법인 품종관리 등), 외국 법인{Center Inc.(센터 인코퍼레이션), Center co., Ltd.(센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등)}]

-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한다.

[예시 - 010-1234-1234, 01012341234, 043-123-1234, 0431231234 등]

2) 내용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품종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아래의 학명 및 일반명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품종의 명칭”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등]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학명	일반명
표고	<i>Lentinula edodes</i> (Berk.) Pegler	표고
목이	<i>Auricularia auricula-judae</i> (Bull.) Quél.	목이
복령	<i>Wolfiporia extensa</i> (Peck) Ginns	복령
사삼	<i>Adenophora triphylla</i> var. <i>japonica</i> (Regel) H. Hara	잔대
시호	<i>Bupleurum falcatum</i> L.	시호
오갈피	<i>Eleutherococcus sessiliflorus</i>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천궁	<i>Cnidium officinale</i> Makino	천궁
하수오	<i>Fallopia multiflora</i> (Thunb.) Haraldson	하수오
백출 및 창출	<i>Atractylodes ovata</i> (Thunb.) DC.	삼주
백출 및 창출	<i>Atractylodes koreana</i> (Nakai) Kitam.	당삼주

※ 산림용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을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검색한 자료임.

- “육성자의 성명”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품종을 실제 육종·개발한 육성자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품종의 주요특성”란에는 품종의 주요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명시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면 된다(“82”쪽 품종특성의 설명에 대한 예시를 참고).
-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란에는 재배요령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면 된다.

3)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4) 수수료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는 품종당 5만원이며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89”쪽을 참고).

다.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17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31”쪽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 서식을 활용).

☞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보완한 수입적응성 시험 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의 변경 및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배시험 실시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또는 불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재배시험 실시자(시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17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서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을 할 수 있는 자(재배시험 실시자)는 ①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관련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배시험 실시자는 ①과 ②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위 재배시험 실시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인이 재배시험 실시자가 될 수 있다.

마.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재배시험 실시자는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결과(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내용)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인은 재배시험 실시자가 작성한 시험결과(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내용)를 첨부하여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 보고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33”쪽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및 시험결과 작성 서식을 활용).

☞ 시험결과 작성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정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000 특성조사요령”(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발간물을 활용할 수 있다.

3.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요청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인은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바.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재배시험을 요청 할 수 있다.

접수인란				결재인란	
바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③ 주소		④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명		⑥ 생년월일		2)
	⑦ 주소		⑧ 전화번호		
출원정보	⑨ 출원번호		⑩ 출원일자		3)
⑪ 품종의명칭					4)
⑫ 재배시험요청사유					5)
⑬ 재배시험유의사항					6)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 세부실시요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년 월 일 </div>					7)
신청인(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9) 약속서 1부					8)

바.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요청서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개인의 경우 신고증명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법인은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외국 주소{(27495)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한다.

[예시 - 010-1234-1234, 01012341234, 043-123-1234, 0431231234 등]

2) 대리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신청인의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3) 출원 정보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품종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품종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한 품종일 경우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각각 적어야 한다.

[예시 - 출원번호(2018-00), 출원일자(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등]

4) 품종의 명칭

“품종의 명칭”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등]

5) 재배시험 요청사유

“재배시험 요청사유”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자가 재배시험을 요청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6) 재배시험 유의사항

“재배시험 유의사항”란에는 수입적응성시험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7)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 한다.

8) 수수료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수수료는 품종당 500,000원이며,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89”쪽을 참고).

9) 구비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인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확약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재배시험에 필요한 종자시료를 시험자의 요청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재배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36”쪽 확약서 서식을 활용).

IV. 종자관리사 등록 · 변경 · 재발급

1. 종자관리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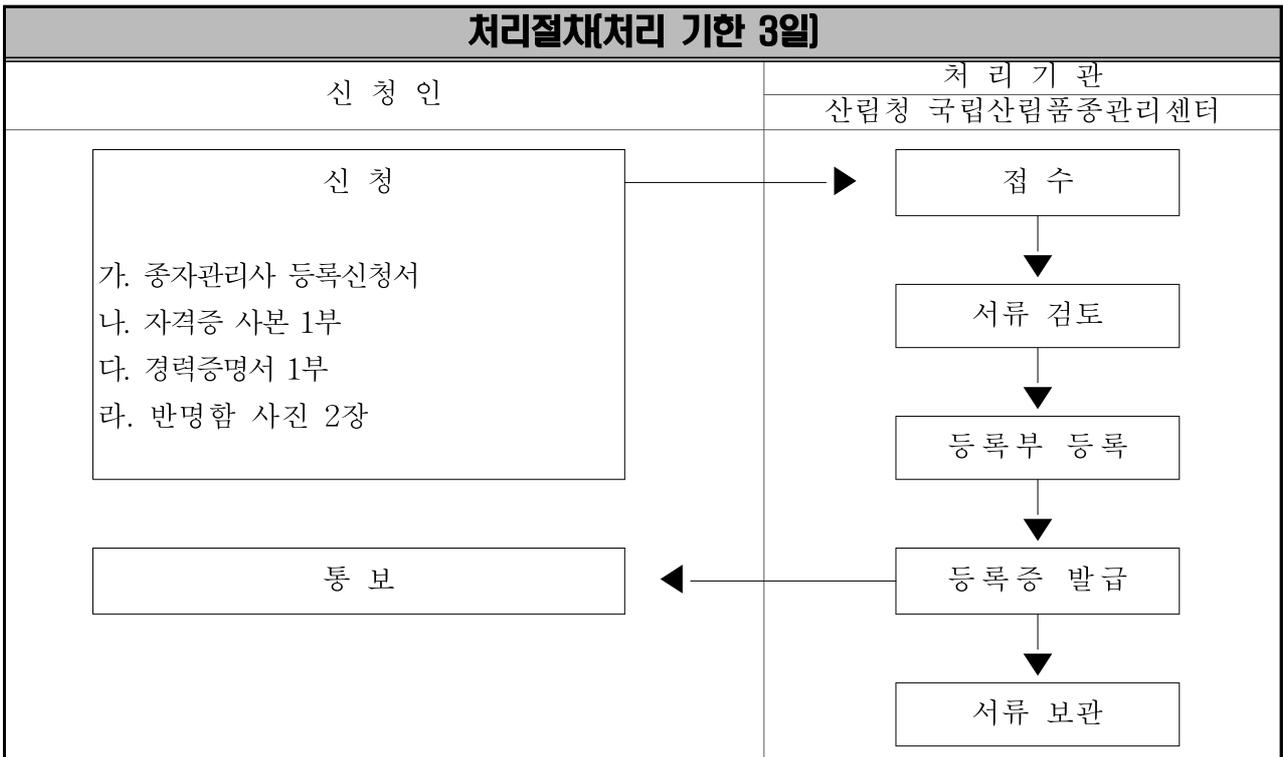
□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종자관리사”란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이며, “보증종자”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종자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종자관리사는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산림분야 종자업을 위한 종자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서”,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반명함 사진 2장”을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등록해야 한다.

☞농업분야 종자업을 위한 종자관리사는 국립종자원에 등록해야 한다.

☞종자관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43-850-331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분야 종자관리사 등록 처리 절차



가. 종자관리사 등록 신청서

1) 서식 종류 :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중 “등록 신청서”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2)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 “성명”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기입한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예시 - 010-1234-1234, 01012341234, 043-123-1234, 0431231234 등]

3) 관리품목 : ([] 일반, [] 버섯)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한다.

「관리품목」별로 종자관리사가 보증할 수 있는 종자가 달라지므로 일반 종자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란에, 버섯 종균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버섯”란에 표시, 일반 종자와 버섯 종균 모두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란과 “버섯”란에 모두 표시하고 각 품목별 첨부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4)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자격증 사본

관리품목([] 일반, [] 버섯)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증이 구분되며 신청한 관리품목에 해당되는 자격증 중 1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관리품목별 요구 자격증 >

관리품목	자격증
일반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버섯	버섯종균기능사

다.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하는 자격증 종류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요구 경력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자격증의 경력기간이 충족되는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자격증별 요구 경력기간 >

구분 No.	자격증	요구 경력기간
1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2	종자기능사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3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4	종자기사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5	종자기술사	요구 경력 없음

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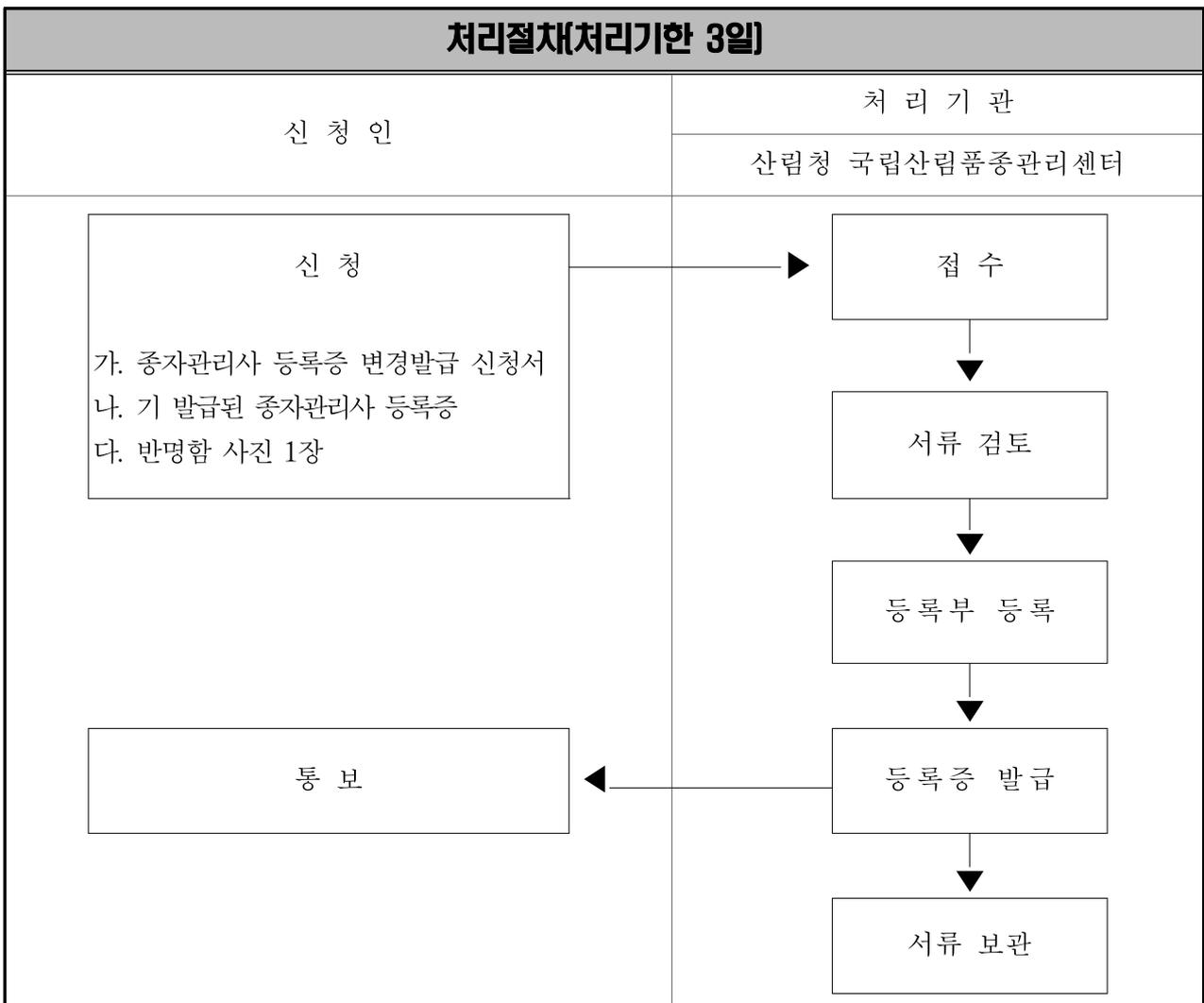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종자관리사 등록사항 변경

- 산림분야 종자관리사 등록 기재사항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존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 받으려는 자는 “가.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나. 기존 발급된 종자관리사 등록증”, “다. 반명함 사진 1장”을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게 신청해야 한다.

농업분야 종자관리사 등록사항 변경은 국립종자원에 신청하면 된다.

- 산림분야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 처리 절차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가

- 1)
- 종자관리사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일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2)
	주 소	전화번호	

관리품목	[] 일반 [] 버섯
------	---------------

변경사항	변경 전	3)
	변경 후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	-----------------------

「종자산업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 사진 1장	수수료 없 음
------	---	------------

나~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1) 서식 종류 :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중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2)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 기재 방법과 동일하다.

3) 변경사항 : “변경 사항”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일부 변경 사항(성명 등)에 대해서는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성명 변경사항 기재 예시 >

변경사항	변경 전
	홍길동
	변경 후
	홍**

< 성명 및 전화번호 변경사항 기재 예시 >

변경사항	변경 전
	성명 : 홍길동, 전화번호 : 010-1234-5678
	변경 후
	성명 : 홍**, 전화번호 : 010-4321-8765

4)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 전 발급되었던 종자관리사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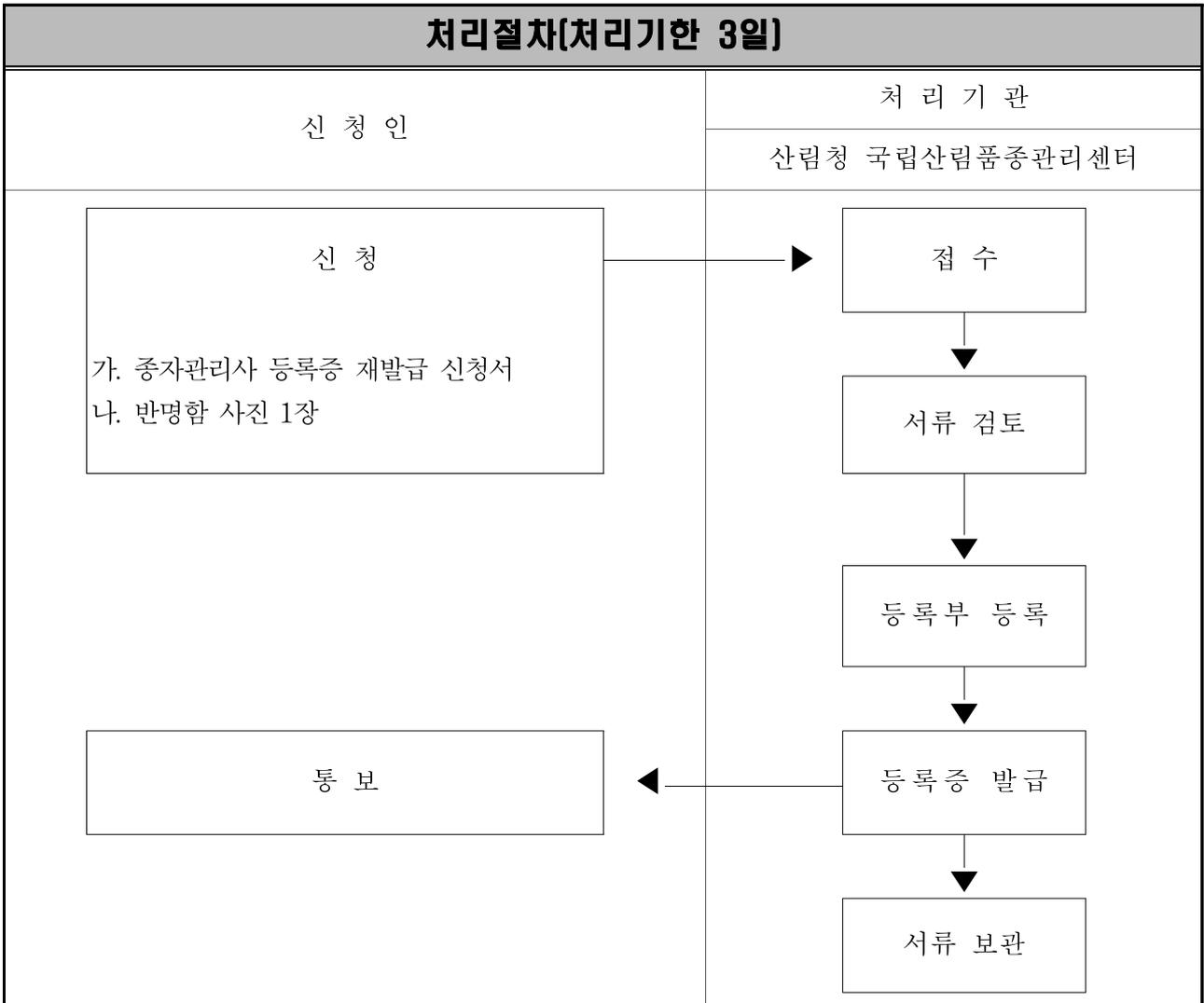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을 제출해야 한다.

3.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 산림분야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가.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나. 반명함 사진 1장”을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게 신청해야 한다.

농업분야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국립종자원에 해야 한다.

- 산림분야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처리 절차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가

- 종자관리사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2)
	주소	전화번호	

관리품목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버섯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	재발급 신청사유	3)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 사진 1장	수수료 없음
------	---	-----------

나

210mm×297mm[백상지 80g/㎡]

가.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서식 종류 :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중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2)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 기재 방법과 동일하다.

3) 재발급 신청 사유 :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은 재발급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종자관리사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

- 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러 아래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의 개별기준과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단, 취소 최종 결정은 청문을 거쳐 결정)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근거 법조문	위 반 행 위	행정처분의 기준
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	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처분기간에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7. 1. 11> 바.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1회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사.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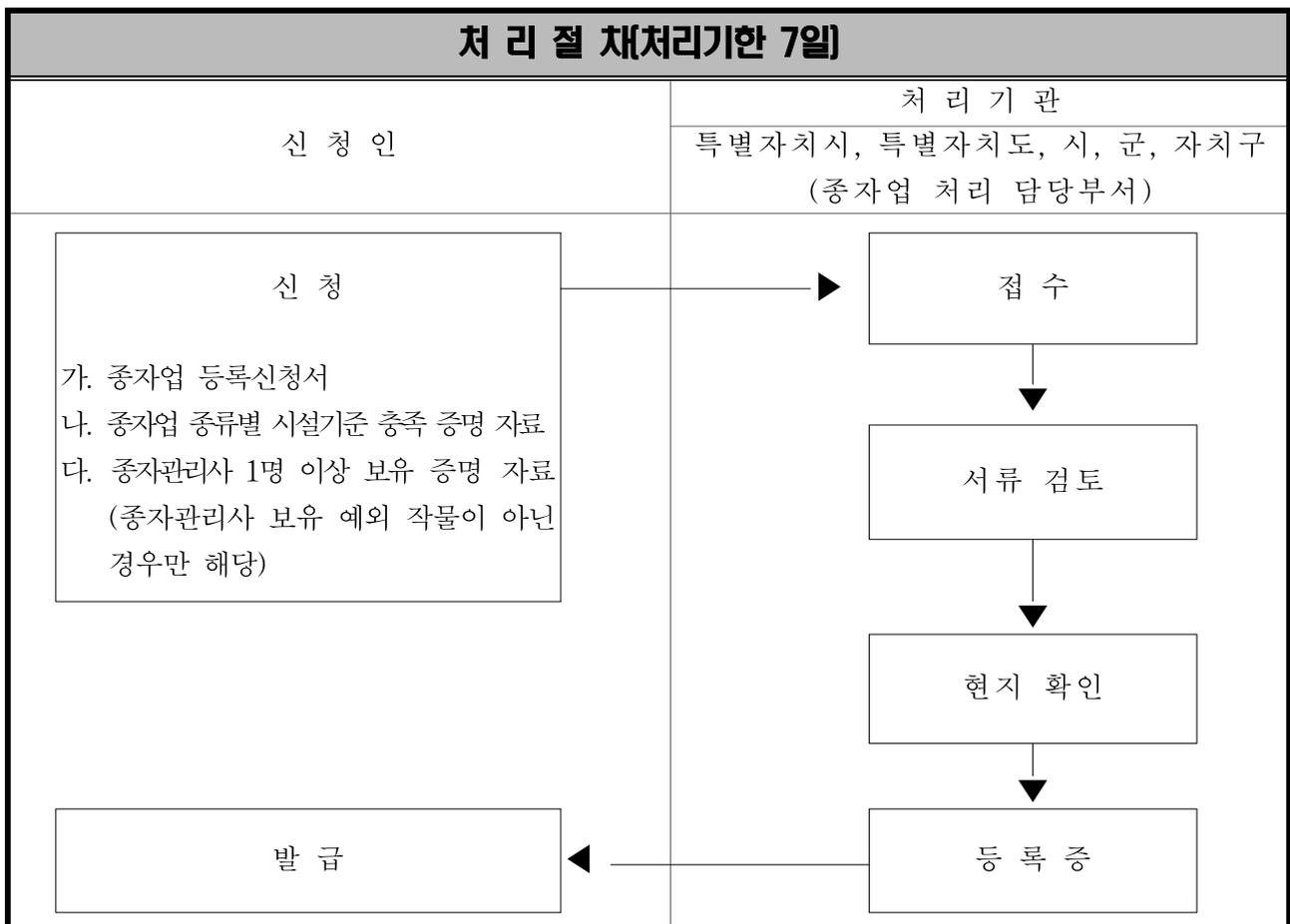
V. 종자업 등록 · 변경 · 재발급

1. 종자업 등록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가. 종자업 등록신청서”, “나. 종자업 종류별 시설 기준이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다.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를 종자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농업단체 등”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 종자업 등록 처리 절차



가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2)	
	종자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나 다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 종자업 등록신청서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개인의 경우 신고증명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법인은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외국 주소{(27495)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하셔야 한다.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예시 - 010-1234-1234, 01012341234, 043-123-1234, 0431231234 등]

- “법인 명칭”란에는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법인(영농조합법인 국립산림, 농업회사법인 품종관리 등), 외국 법인{Center Inc. (센터 인코퍼레이션), Center co., Ltd.(센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등)}]

2) 내용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상호”란에는 법인은 적지 않으며, 개인 기업체의 상호를 적어야 한다.

- “종자업 구분”란에는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해야 하며, 모두 체크할 수도 있다.

-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 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해야 하며, 등록 신청하는 종자업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일반, [] 벚꽃, [] 해당 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외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만 표시해야 한다.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작물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식량작물(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벚꽃류(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 법인인 경우 본사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한다.
-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함.)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함.)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한다.

3)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종자업 종류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 자료

신청하는 종자업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이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임대권, 임차권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자를 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 있다.

종자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	1)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 3,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나. 과수

시설	1) 묘목포장(苗木圃場) :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다. 화훼

시설	1) 교배방법의 경우	가)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 3,000㎡ 이상일 것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가) 실험실 :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 1대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라. 버섯

시설	1) 실험실 : 16.5㎡ 이상일 것
----	----------------------

	2) 준비실 :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	1) 실험실 :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술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 고압 살균기(압력: 15~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마. 식량작물(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	1) 철재하우스 :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 3,000㎡ 이상일 것
장비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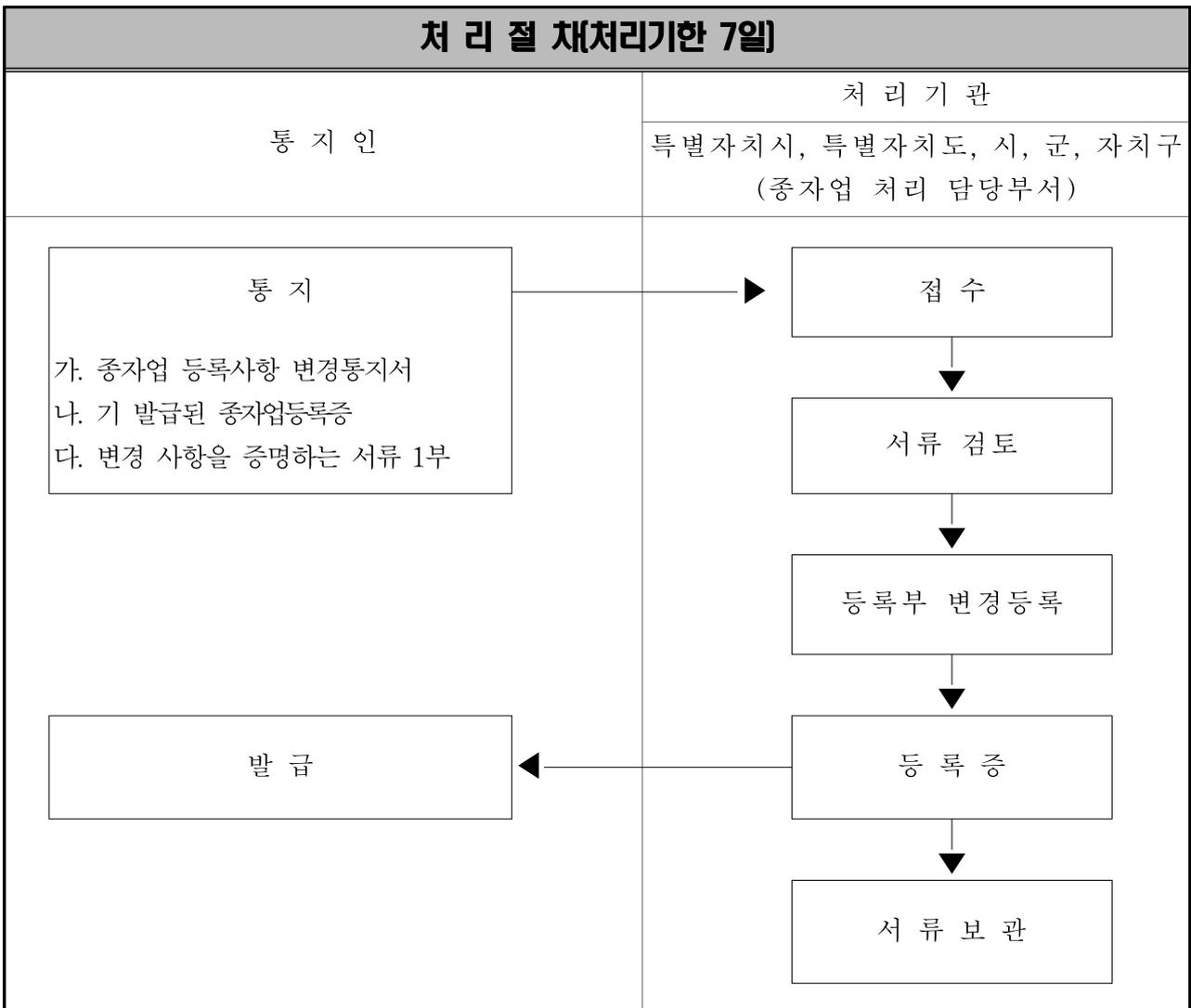
다. 종자관리사 1명 이상 보유 증명 자료

종자관리사가 필요한 작물{식량 : 벼·보리·콩·옥수수·감자(사료용은 제외), 과수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 채소류 :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 버섯류 : 양송이·느타리버섯·팽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표고버섯}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 자신이 종자관리사인 경우 신청인의 종자관리사 등록증 사본, 직원이 종자관리사인 경우 해당 직원의 종자관리사 등록증 사본 및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의료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종사업 등록사항 변경

- 종사업자는 종사업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나. 기 발급된 종사업등록증”,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종사업이 등록된 관할청에 통지해야 한다.

□ 종사업 등록사항 변경 통지 처리 절차



가

[] 종자업
[]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통지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1)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 소	
	[] 종자업 [] 육묘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 폐업	2)
	[] 기타(세부내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3)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나 첨부서류 다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수수료 없 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가.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서식 제목에서 (종자업, 육묘업) 중 “ 종자업 ”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1) 통지인 : 각 란의 사항은 “종자업 등록신청서”의 기입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통지인”으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

- “ 종자업, 육묘업 등록번호 ”란에는 종자업란에 표시(√)를 한 후 종자업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제 14-충북-2018-70-0000 호” 등]

2) 변경사항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 폐업 ”란에는 더 이상 종자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표시(√)를 한다.
- “ 기타 ”란에는 폐업이 아닌 기존 종자업 등록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표시(√)를 한 후 세부 내용을 적어야 한다.

< 기타 세부변경 내용 기재 예시 >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세부내용 : 대표자명, 법인명칭) 대표자명 : 홍길동 → 홍**, 법인 명칭 : 국립산림품종 → 품종관리센터
------	---

3) 제출일자, 통지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통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종자업등록증

변경 전 발급되었던 종자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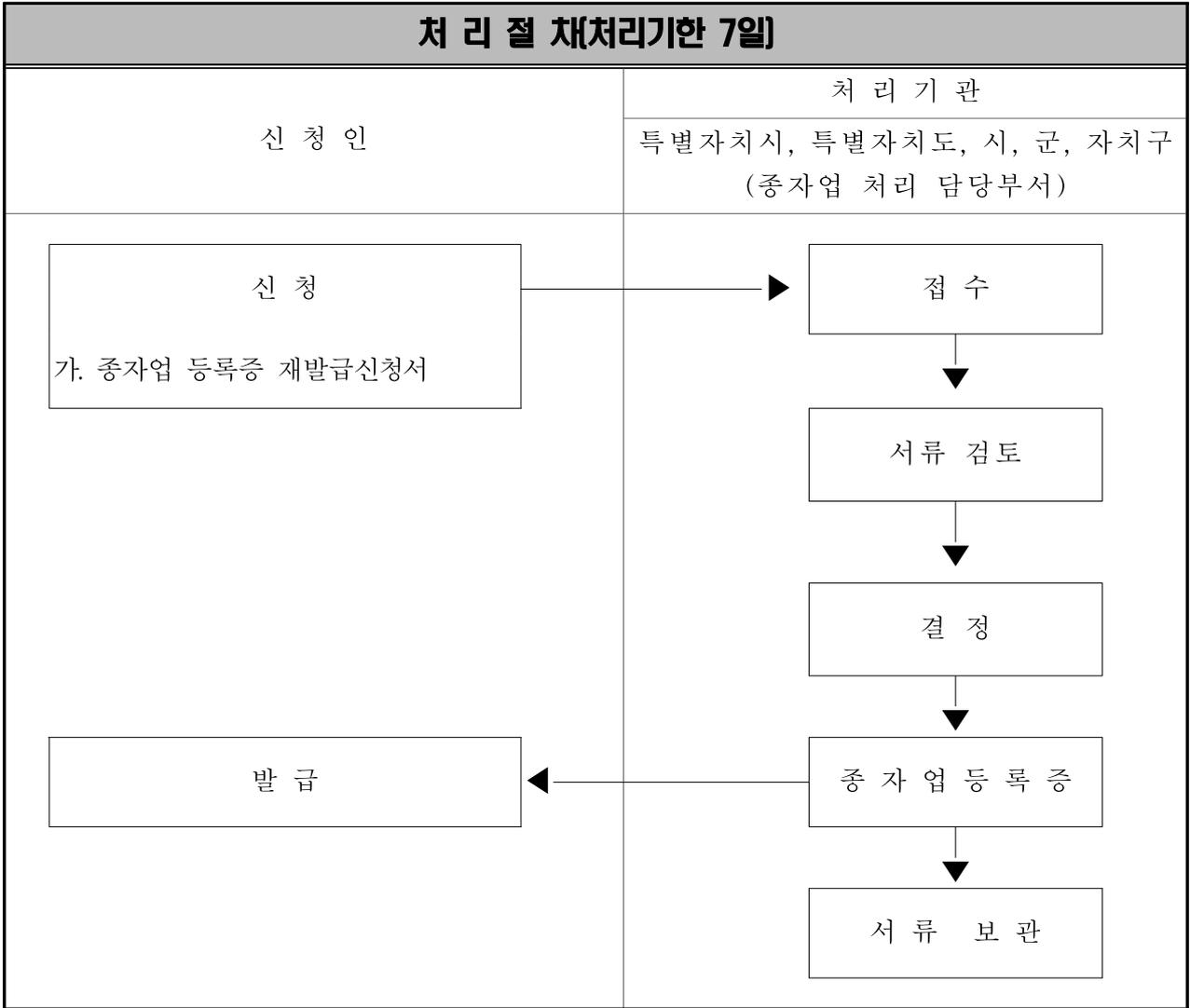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자료(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종자업등록증 재발급

□ 종자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가.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구비하여 종자업이 등록된 관할청에 신청해야 한다.

□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 절차



가

[] 종자업
[] 육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1)
	법인명칭	전화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 종자업 등록번호	[] 종자업 등록일 2)
	[] 육묘업	[] 육묘업 등록일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3)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가.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목에서 ([] 종자업, [] 육묘업) 중 “[] 종자업”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종자업 등록신청서”의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2) 사건의 표시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 종자업, [] 육묘업 등록번호”란에는 [] 종자업란에 표시(√)를 한 후 종자업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제 14-충북-2018-70-0004 호” 등]

- “[] 종자업, [] 육묘업 등록일”란에는 [] 종자업란에 표시(√)를 한 후 종자업 등록일자를 적어야 한다.

[예시 - 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3) 신청사유 : 각 란의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종자업 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사유가 발생한 날”란에는 상기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

4) 제출일자,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4. 종사업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사업자가 아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종사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의 개별기준 위반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사업 등록을 취소(단, 취소 최종 결정은 청문을 거쳐 결정)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종사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계속营业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종사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사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종사업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사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차.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6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VI.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변경신고 및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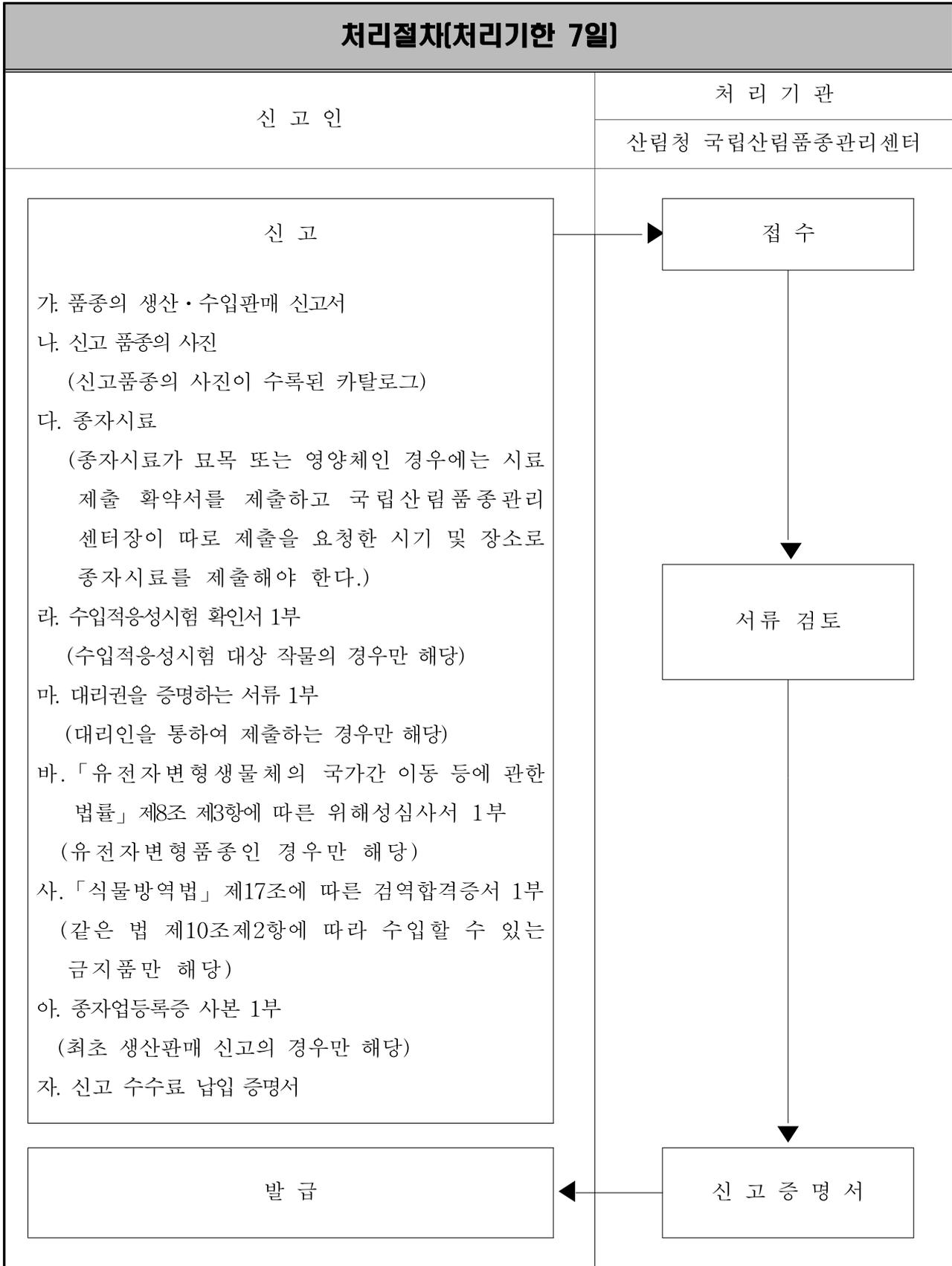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및 「종자산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제외한 산림분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다. 종자시료”(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의 경우만 해당), “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 “사.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 “아.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 “자. 신고 수수료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면 접수 신청시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43-850-331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처리 절차



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1)
	주소		
	법인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2)
	주소	전화번호	
육성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3)
	주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품종의 명칭			5)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6)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7)
종자업 등록번호			8)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9)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나~다 라 마 바 사 아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수수료 전자 : 품종당 2만원 서면 : 품종당 3만원 ※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1건 으로 처리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합니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1) 신고인 : 종자업 행위를 하는 주체로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인에 해당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어야 한다.

-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홍길동), 외국인{홍길동(Gil-dong Hong)}]

☞ 만약 본인이 법인의 대표로 종자업을 하면서 개인으로도 종자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별도 신고해야 한다.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인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인(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외국인(미국)]

- “주소”란에는 개인의 경우 신고증명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27495)}, 외국 주소{(27495)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된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 “법인 명칭”란에는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국내 법인(농업회사법인 품종관리 등), 외국 법인{Center Inc.(센터 인코퍼레이션) 등}]

- “전화번호”란에는 신고인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예시 - 010-1234-1234, 043-123-1234 등]

2) 대리인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한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종자업 행위를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게 신고에 관한 제반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작성 요령은 상기

신고인 기재 방법과 동일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리인은 원활한 신고 진행을 위해 국내인으로 위임할 것을 추천하며 대리인 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문제(대리인이 허위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취소, 처벌 등)는 신고인에게 귀속된다.

3) 육성자

신고인이 신고하려는 품종을 실제 육성(개발)한 육성자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육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육성자가 불분명하거나 “재래종” 처럼 과거부터 알려져 왔던 품종 등)에는 육성자 기입을 생략하거나 신고 품종을 직접 생산한 자(본인, 구매처 등)를 육성자로 기입할 수 있다. 또한, 육성자가 신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다.

▶육성은 자연인(사람 = 개인)의 사실 행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행위능력(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인은 육성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육성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 육성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상기 신고인 기재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제 육성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다.

○ 육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기 신고인 기재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고 품종을 직접 생산·가공·재포장한 자 또는 구입한 구매인·구매처의 정보 등을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은 품종이 속하는 “종의 학명 및 국명”을 의미하며 다음의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품종이 속하는 종이 불확실한 경우 중 동정 전문가, 전문기관, 구입 회사 등에 요청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확한 종의 학명 또는 국명을 확인한 후, “국가표준식물목록(<http://www.nature.go.kr>)”에서 검색하여 해당 종의 학명 및 국명이 정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학명 및 국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학명은 명명자를 제외한 속명과 종소명은 이탤릭체(또는 정자로 작성 후 밑줄)로 기재해야 한다.

[예시-(학명: *Juglans regia* L. 일반명: 호두나무), (학명: Juglans regia L. 일반명: 호두나무)]

☞ 학명 구성 요소 : *Juglans*(속명) *regia*(종소명) L.(명명자)

○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신고하려는 품종이 속하는 종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접속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작물명을 검색하여 해당 작물의 학명 및 국명이 검색된다면 해당 학명 및 국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호두나무를 검색한 화면 >



○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신고하려는 품종이 속하는 종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신고하려는 작물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신고 품종이 속하는 종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가표준식물목록에 해당 종의 등록을 요청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5) 품종의 명칭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한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또한,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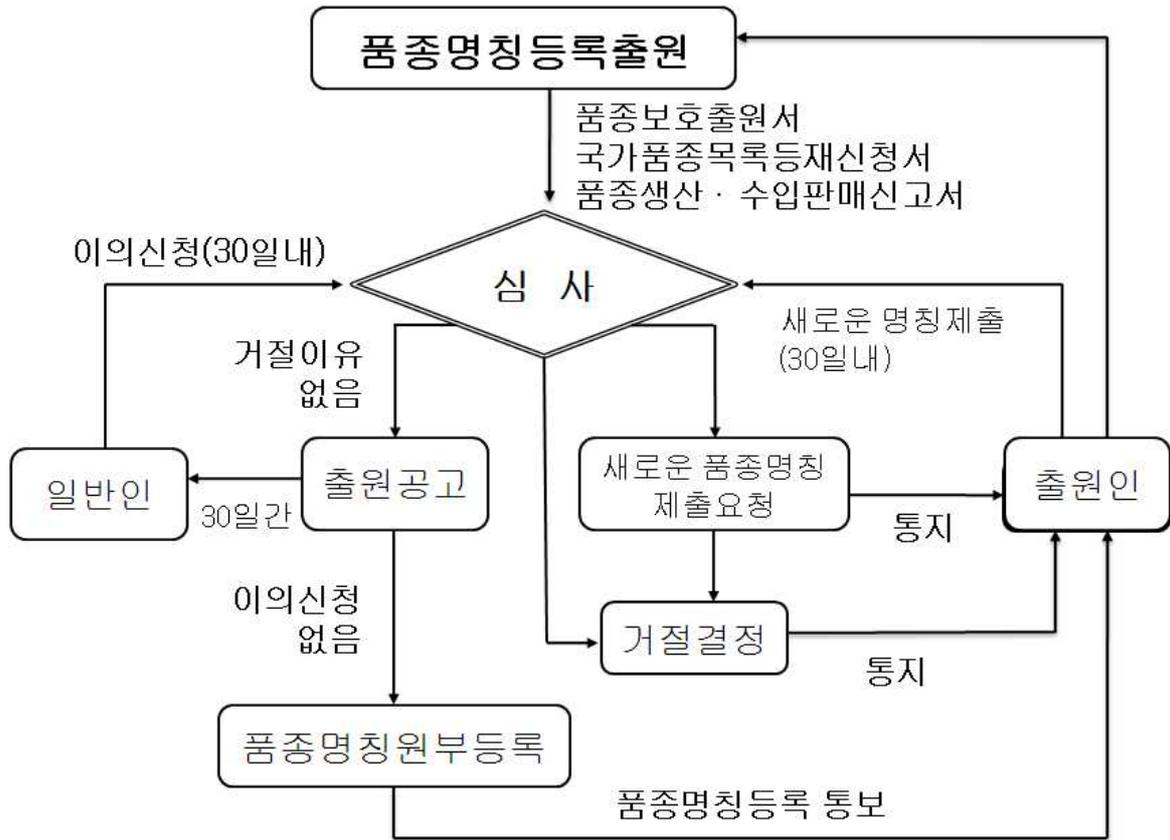
직접 육성한 품종의 경우에는 아래의 품종명칭 등록요건에 맞게 적절히 고유한 품종명칭을 작명하여 신고하면 다음의 품종명칭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요건이 적격하다고 인정되어야 해당 신고 품종의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이 육성한 품종을 구입한 경우에는 신고 품종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품종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타인이 육성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품종명칭 또는 국내·외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품종명칭이 반드시 해당 품종의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종자산업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 규정』)따라 명칭 심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명칭 등록부에 등록되었거나 품종명칭 등록 출원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으로 등록되었거나 품종명칭 등록 출원한 경우만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신고인께서 알고 있는 품종명칭과는 다른 품종 명칭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꼭 신고 품종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명칭 등록 출원인도 그 품종명칭에 대해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품종명칭 심사(출원 및 등록) 절차



○ 직접 육종한 품종인 경우

작명한 품종명칭으로 신고 서류 일체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 → 품종명칭 심사 (품종명칭 등록 요건 심사) → 거절이유 없을 경우 → 출원공고 → 이의신청 없으면 품종명칭등록부에 등록 → 해당 품종으로 신고증명서 발급

○ 타인이 육종한 품종의 품종명칭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품종명칭으로 신고 서류 일체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 → 품종명칭 심사 (품종명칭등록부 등록 여부 및 품종명칭 등록 요건 심사) → 거절이유 없을 경우 (등록부에 등록된 품종은 생략) → 출원공고(등록부에 등록된 품종은 생략) → 이의신청 없으면 품종명칭등록부에 등록(등록부에 등록된 품종은 생략) → 해당 품종으로 신고증명서 발급

※ 품종명칭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품종명칭만 심사를 진행한다.

품종명칭 등록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타인이 육종한 품종의 품종명칭을 모르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만약 다른 명칭으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때문에 최초 품종 확보시 정확한 품종진위 확인(품종명칭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종자산업법」 제54조제6호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 및 육성 계통도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품종임을 적어야 한다.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유통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 경위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예시 1 >

가. 품종육성 경과도표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료수집								
계통양성								
우수 개체 및 집단 선발								
세대진전 및 특성조사								
실증 실험 및 출원								

나. 육성경과 도표 설명서

- 1) 2010년~2012년 : 재료수집 및 계통양성
 - 과실의 특성이 우수한 계통과 내한성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자생지에서 선발한 우량 개체와 일본에서 도입한 A품종 등을 수집하여 목적에 따라 교잡 또는 선발 후 계통 양성
- 2) 2012년~2014년 : 우수 개체 및 집단 선발
 - 육종 목적에 부합되는 계통 또는 집단들을 1차 선발
- 3) 2014년~2015년 : 세대진전 및 특성조사
 - 1차 선발된 계통 또는 집단을 세대 진전하며 각 계통(집단)별로 특성조사 특성 조사 및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의 계통(집단)을 최종 선발
- 4) 2015년~2017년 : 실증 실험 및 출원
 - 최종 선발된 계통(집단)의 실증 실험(생산력 및 지역 적응성 검정 등)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여 “○○” 품종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고자 함.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예시 2 >

가. 육성계통도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 ₁ V ₀)	V ₁	V ₂	V ₃
	‘A품종’ × ‘재래종’	AC-0001 · AC-0060	AC-0044	AC-0044	AC-0044 ‘○○’으로 명명
육성계통수		60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 특성검정	2차 특성검정	3차 특성검정

나. 육성계통도 설명

2013년도에 “A품종”을 모본(우)으로 하고 OO지역에서 수집한 우량 재래종을 부분(♂)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14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이 우수하고 초장이 왜성 특성을 보이는 60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15년~2017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결과 실내·외 조경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AC-0044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OO’으로 명명하고 품종보호출원을 하고자 함.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예시 3 >

○ 본 예시는 수입품종, 일반종 등 육성과정을 생략할 수 있거나 육성 과정을 알 수 없는 품종만 해당

- 수입품종 1 : 홍길동(또는 농업회사법인 품종센터)가 OO년에 OO나라 OO업체에서 밤나무 OO품종의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생산, 가공, 재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 수입품종 2 : 홍길동(또는 농업회사법인 품종센터)가 OO년에 OO나라 OO업체에서 표고버섯 OO품종의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재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 일반종 1 : 홍길동(또는 농업회사법인 품종센터)가 OO년도에 국내 OO업체에서 구입한 역사 종자를 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OO지역에서 직접 재배 후,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 일반종 2 : 홍길동(또는 농업회사법인 품종센터)가 OO년도에 국내 OO지역에서 직접 채종한 곰취 종자를 OO지역에서 재배한 후,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7) 품종특성의 설명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종자관리요강」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형태적 특성 위주로 신고 품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일반종의 경우 신고 작물의 일반적인 특성 등) 및 신고 품종의 재배 시 유의 사항 등을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고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 잘 모른다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간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000 특성조사요령”[산림청 홈페이지(신품종출원 → 특성조사요령(TG) 목록)에서 확인 가능] 발간물을 참조하면 대표적인 형태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품종특성의 설명 작성 예시 1 >

품종특성의 설명							
번호	특성	표현형태	계급	출원품종		대조품종	
				계급치	실측치	계급치	실측치
1	특성조사장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2	특성조사자 성명	홍길동					
3	특성조사년도	2017~2018					
4	대조품종명	0000					
5	품종특성표						
8	갓과 대의 위치	중심생 편심생 기타	1 2 9	1		2	
9	갓 모양(측면)	중앙오목형 편평형 평반구형 중앙볼록형 기타	1 2 3 4 9	3		4	
11	갓의 직경	40mm 이하 41~50mm 51~60mm 61~70mm 71~80mm 81mm 이상	3 4 5 6 7 8	4	50mm	6	62mm
12	갓의 두께	9mm 이하 10~15mm 16~20mm 21mm 이상	2 4 6 8	4	15mm	2	8mm
22	대의 모양	기둥형 깔대기형 곤봉형 기타	1 2 3 9	1		1	

27	대의 색	없음 있음	1 9	1		1	
34	발이온도	저온 중온 고온	3 5 7	5	14~28℃	3	10~24℃

- 갓은 평반구형이고 직경은 평균 50mm이며 두께는 평균 15mm이다.
- 대는 갓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둥형이고 색이 없다.
- 버섯의 발이온도는 평균 14~28℃로서 중온성이다.
- 재배시 유의 사항
 - 톱밥봉지 균사 배양시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고온피해를 막아야 한다.
 - 버섯 발생시 고온으로 장시간 유지시키면 기형 버섯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온도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향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정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에서 “톱밥재배용 표고 품종 조사기준 및 방법”에 기재된 특성 8, 9, 11, 12, 22, 27, 34번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재배시 유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 예시임.

< 품종특성의 설명 작성 예시 2 >

품종특성의 설명

- 줄기 : 높이 1~2m로, 뿌리줄기는 모여 나고 굵으며 원기둥 모양이다.
- 잎 : 줄 모양이며 길이 40~70cm, 나비 1~2cm이다. 끝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는 까칠까칠하다.
- 꽃 : 9월에 줄기 끝에 부채꼴이나 산방꽃차례로 달리며 작은 이삭이 촘촘히 달린다. 제1포영은 윗부분에 잔털이 나고 5~7개의 맥이 있으며 제2포영은 3개의 맥이 있다. 끝이 2갈래로 갈라진 포영에서 길이 8~15mm의 까끄라기가 나온다. 내영은 길이 약 1.5mm로서 작으며 수술은 3개이다.
- **세계 전문가들이 탐을 내고 녀을 잃게 하는 매혹적인 종이다.**
→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제외해야 할 특성 설명임.)

향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되지 않은 작물 또는 일반종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특성을 서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해야 함.

8) 종자업등록번호

최초의 생산·판매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신고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용도 [벼, 기타(산림작물)] 중 해당되는 종자업 종류의 종자업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단, 수입 판매 신고자는 종자업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종자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53”쪽을 참조).

향선의의 피해(종자업 미등록 상태에서 종자업 행위로 인한 처벌 등)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판매 신고자도 종자업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9) 제출 일자, 신고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향기입한 제출 일자가 접수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물건(종자 시료)에 거절 이유가 없고 신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짜가 접수 일자이다.

○ 신고인(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신고인(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품종의 사진

신고품종의 주요 특성 및 해당 품종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다.

사진의 제출규격

1. 사진의 크기

4" × 5"의 크기여야 하며, 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진의 색채

원색으로 선명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3. 촬영부위 및 방법

1) 산과수 : 과실 성숙기의 전경, 과실의 측면, 상면, 하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 2) 조정수 : 생육최성기의 포장 전경, 잎의 상면, 후면, 꽃의 측면 및 상면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 3) 산채 : 수확기 포장 전경, 식용부위의 측면, 상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 4) 야생화 : 개화기의 포장 전경, 꽃의 측면, 상면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 5) 특용 : 산과수 내지 야생화의 경우에 준한다.
- 6) 버섯 : 버섯이 제일 많이 발생된 전경, 수확기 버섯의 횡단면, 종단면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 7) 기타 : 산과수 내지 야생화의 경우에 준한다.

4. 제출방법

사진은 A4 용지에 붙이고 하단에 각각의 사진에 대해 품종명칭, 촬영부위, 축적과 촬영일시를 기록한다.

5. 제출매수 : 각 1매

다. 품종의 종자 시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호제1호에 따라 산림분야 신고품종의 종자시료 제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49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16호 종자보관 관리요령 규정」를 참고하여 해당 작물의 종자 시료량 만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류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종자시료를 자체 보관(대신 86쪽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료 제출 약약서”를 작성하여 동봉해야 함.)할 수 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별도의 제출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16호 종자보관 관리요령 규정」에 따라 제출한 종자시료 점검 결과, 제출해야 할 시료량에 미달하는 경우, 발아율이 정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종자시료가 발아되었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등 기타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한 종자시료의 제출을 재요청할 수 있다.

라.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대상 작물의 경우만 해당)

국내에서 수입적응성시험이 인정된 품종에게 발급되는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7”쪽을 참고).

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종자산업법」에서 명시하는 절차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성춘향 생년월일 1900. 1. 1.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전화번호 010-1234-5678
위임인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 2. 2. (외국인은 국적)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우두별 8길 6-5 전화번호 010-1234-1234
	사건과의 관계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인
	위임할 사항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위와 같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17년 3월 3일	
위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바. 위해성심사서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

신고하려는 품종이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검역합격증명서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

신고하려는 품종이 「식물방역법」에서 명시하는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역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종자업등록증 [최초의 생산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

신고하려는 품종이 속하는 종자업 종류와 종자업 구분이 명시된 “종자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종자업 종류별로 최초의 생산·판매 신고에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종자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3”쪽을 참고).

자. 수수료

1) 금액 및 납부 기간

『중자산업법』 제51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등”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수수료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수료는 신고 방법[서면, 전자]에 따라 다르다.

< 각종 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 기간 >

신청 내역	수수료 금액	납부 기간	비고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서면 신고 ¹⁾ : 품종당 3만원 •전자 신고 ²⁾ : 품종당 2만원	신청 시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로 취급(25품종을 1품종의 수수료로 인정)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품종당 5백원	신청 시	
수입적응성 시험신청	품종당 5만원	신청 시	산림용 종자의 경우만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신청 시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 1면당 1백원씩 추가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신청 시	

※ 참고

1) 서면 신고 : 우편, 팩스, e-mail로 서류 제출하는 신고

2) 전자 신고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온라인)에서 하는 신고

2) 면제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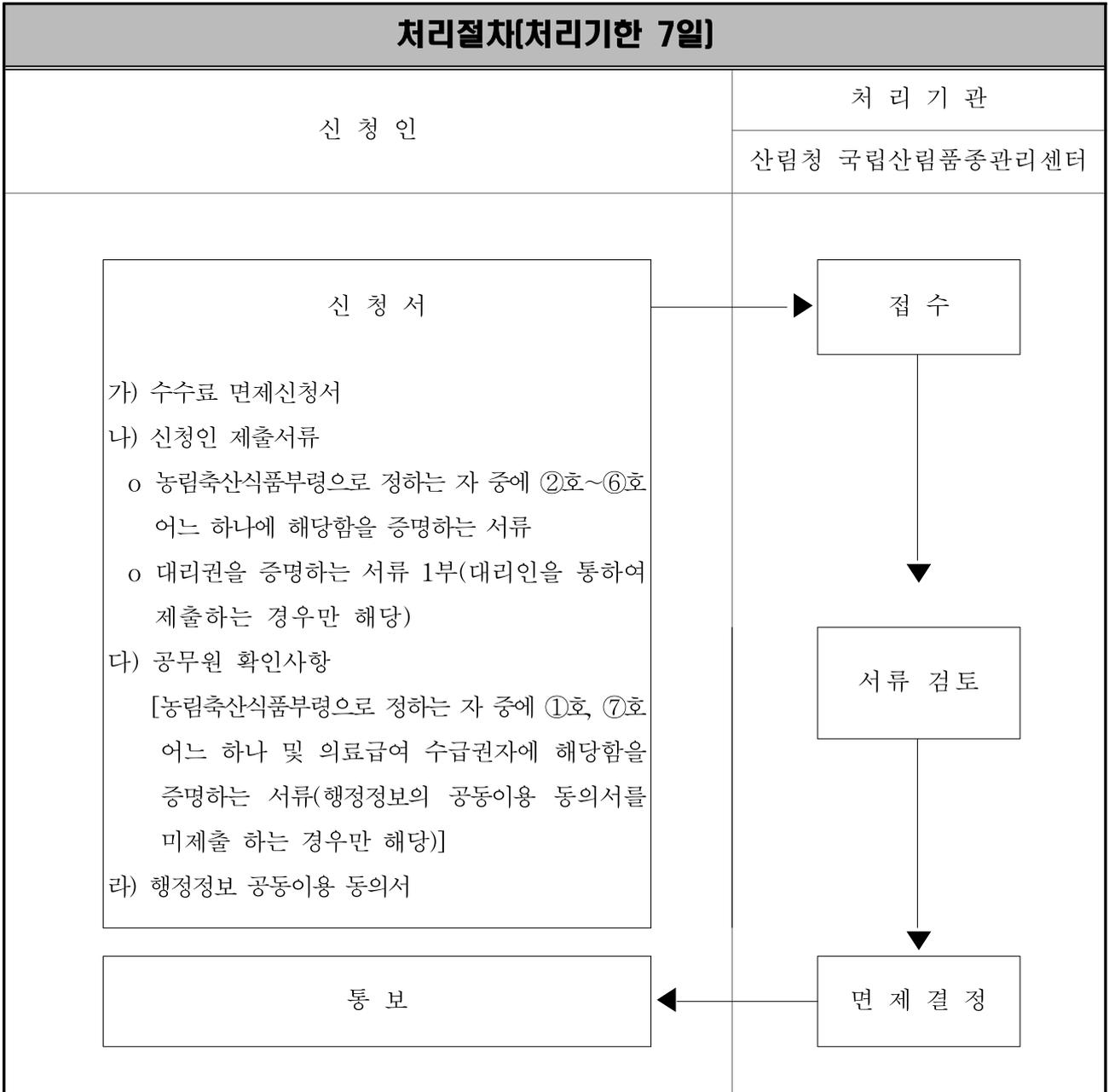
『중자산업법』 제5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상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가) 수수료 면제신청서”, “나) 신청인 제출 서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 ②호~⑥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위해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①호와 ⑦호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를 신청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수료 면제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⑦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수수료 면제 신청 처리 절차



가**수수료 면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가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나
	주소	전화번호	

면제대상 수수료	다
----------	---

면제사유	라
------	---

「종자산업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라)**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수수료 면제신청서

㉑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신고인 기입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

㉒ **대리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대리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㉓ **면제 대상 수수료**

“면제 대상 수수료”란에는 신청인이 면제 받으려는 수수료 내용을 적어야 한다.

㉔ **면제 사유**

“면제 사유”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자 중 신청인이 해당 하는 것을 적어야 한다.

㉕ **제출일자, 신청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신청인 제출서류

- 상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②~⑥호(“90”쪽 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면제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상기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①호 또는 ⑦호(“90”쪽 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해야 한다.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 열람을 허락하는 동의서이다.

※정보 열람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수료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반환 받을 수 있다.

4) 수수료 대체

발생된 수수료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전자신고 절차 안내

1. ①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접속 → ② 분야별산림정보 → ③ 산림자원 → ④ 신제품출원 클릭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통계	분야별정보시스템	연구·교육	통합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묘 조림 숯가꾸기 목재 임도시설 해외산림자원 산림소득지원 신제품출원 임업지원 산림유전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 병해충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나고야의정서(ABS) 숲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기본통계 임산물생산조사 병해충발생통계 임산물수출입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임업통계연보 통계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FGS산림공간정보 산지정보 산지태정보 산림탄소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연구분야 산림연구기관소개 연구자료실 산림교육 산림과학도서관 알기쉬운 산림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자료실 전자북 Magazine 숲 사진자료실 동영상자료실

2. ① 민원신청 → ②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 신고 클릭

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란?
 국적으로 식물 신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신제품개발 촉진 및 중자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임
 품종보호를 위하여 '62년 식물 신제품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채택되었으며, '68년 국제기구인 UPOV(국제식물신제품보호동맹) 결성
 ※ '18년 현재 75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
 조약에 따라 산림분야는 '08년 밤나무, 표고버섯, 속 등 15종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09년 5월 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를 제외한 전 산림식물로 확대되었으며, '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산림식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함
 ※ 산림청 소관 품종보호 대상작물 약 7,400여종(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품종보호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육종자의 권리보호를 통하여 중자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 특허, 저작, 상표등권과 같이 육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 '61년 유럽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식물품종에 관한 특별법 제정
 '68년 결성된 국제기구 UPOV(국제식물신제품보호동맹)에서 주관
 ■ 국제식물신제품보호동맹(UPOV) 회원국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
 ■ UPOV는 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기술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자산업법·식품신제품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
 품종보호: 육종자의 권리보호(식물신제품보호법)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유통질서 확립 및 분쟁대비 근거자료 품종보호 요건
 품종 보호의 요건
 ■ 신규성(Novelty): 국내 1년, 국외 4년(과수, 임목은 6년)동안 상업적 이용이 없는 품종.
 ■ 구별성(Distinctness):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 균일성(Uniformity):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해야 함

3. 회원 가입(회원일 경우 “4”번 진행) 클릭 후 안내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 해당하는 신청하기 클릭 >



< 아래 단계에 따라 회원 가입 >

4. ① 로그인 후 → 이용자등록 클릭 → 해당 사항 입력 후 저장

산림청 정보공개 | 휴양·문화·복지 | 분야별산림정보 | 행정·정책 | 민원·참여 | 산림청소개

산림자원

신제품출원

이용자등록

이용자등록

(*)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소속 구분 개인 법인 공기업 개인회사(농원) 일반단체(일반조합, 단체) 국가기관(지자체)

민원시스템 이용자

이용자 ID

한글명 *

영문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휴대폰 *

E-메일

알림서비스 선택* E-mail 알림 : [] SMS알림 : [] 팝업 알림 : []

시도선택 충청북도

인감도장 이미지 첨부 *

* 인감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십시오.
* 첨부할 이미지파일의 확장자는 gif, jpg로 제한됩니다.
* 이미지크기는 2.5cm[*]2.5cm를 권장합니다.
* 이미지의 상하좌우에 여백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작성」 클릭

산림청 정보공개 | 휴양·문화·복지 | 분야별산림정보 | 행정·정책 | 민원·참여 | 산림청소개

산림자원

신제품출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작성일자

식물명

식물명 검색

품종명칭

Q 검색

생산판매신고서작성 >

6. ① 신고인 등록 → ② 대리인 등록(대리인이 서류 제출하는 경우만) → ③ 육성자 등록(품종 육성자를 알 경우만) → ④ 품종정보 등록 →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내용보기 확인) 체크 → ⑥ 신고서제출(검토 요청) 클릭하면 신청 완료

산림청 정보공개 | 휴양·문화·복지 | 분야별산림정보 | 행정·정책 | 민원·참여 | 산림청소개

Quick Menu: 자주하는 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신고인

등록

(*)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신고인 등록

대리인

대리인 등록

육성자

품종정보 등록

식물

품종

첨부파일

첨부사진 및 카탈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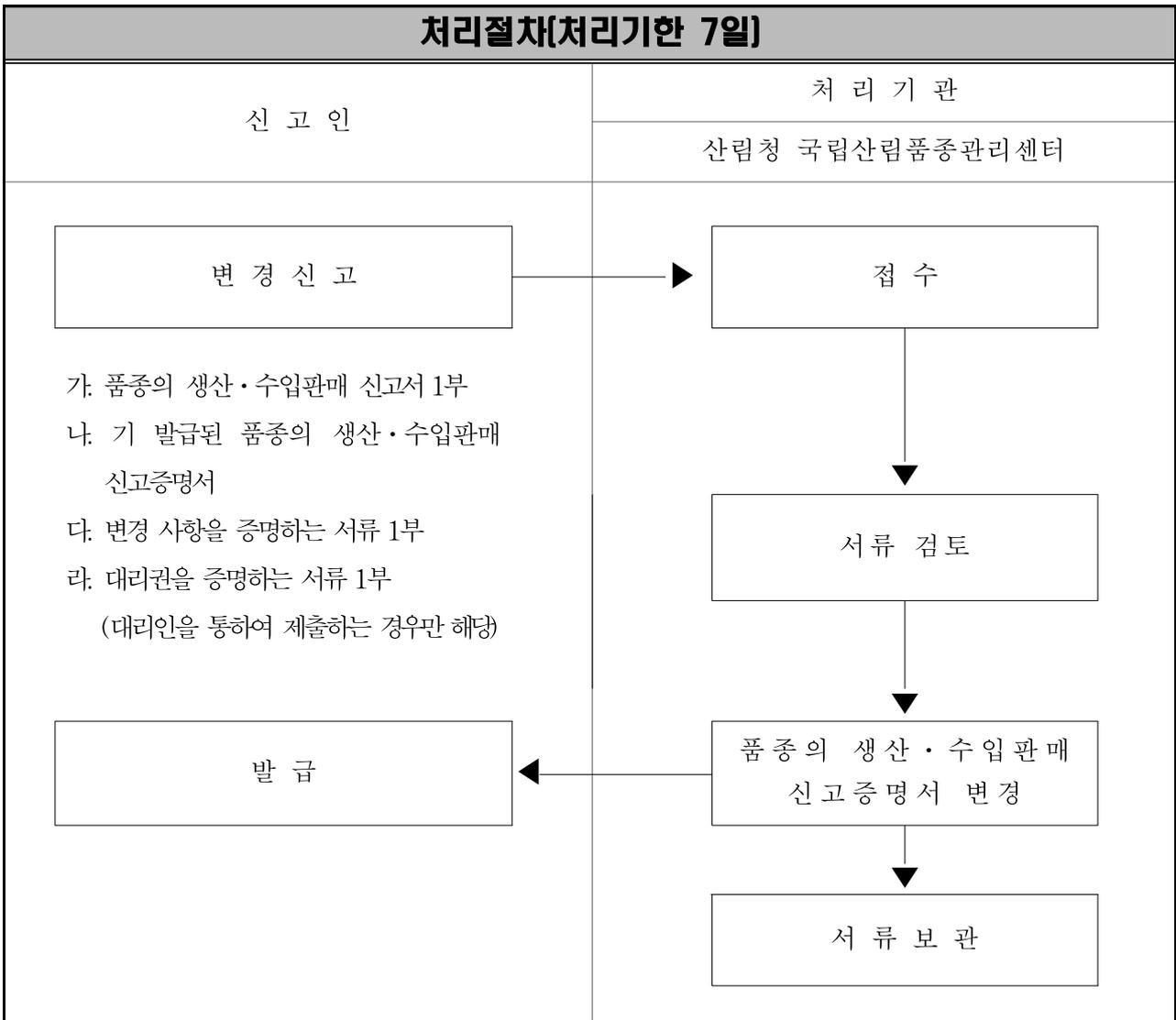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동의합니다. [내용보기](#)

임시저장(작성중) 신고서제출(검토요청) 삭제 목록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

- 「종자산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대표자명, 법인 명칭,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서”, “나. 기존에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을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 처리 절차



가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주소		
	법인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2)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내용			4)
	[]대표자명	[]법인명칭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중자산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5)</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산 립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서

1) 신고인 : 각 란의 사항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신고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2) 대리인 : 각 란의 사항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대리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3) 사건의 표시 : 변경 신청하려는 정보에 대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란에는 변경 전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상단에 표기된 신고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09-06-0001-4000-12” 등]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변경 전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학명 및 일반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학명 : *Juglans regia* L. 일반명 : 호두나무 등]

- “품종의 명칭”란에는 변경 전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4) 변경 사항 : 변경 신청하려는 사항(대표자명, 법인 명칭, 주소)에 대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 “변경 내용”란에는 변경 사항([] 대표자명, [] 법인 명칭, [] 주소)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를 표시해야 한다.

- “변경 전”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변경 전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 대표자명 [✓] 법인 명칭 [] 주소
	변경 전 대표자명 : 이몽룡, 법인 명칭 : 농업회사법인 국립산림품종 변경 후

- “변경 후”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 대표자명 [✓] 법인 명칭 [] 주소
	변경 전
	대표자명 : 이몽룡, 법인 명칭 : 농업회사법인 이몽룡
변경 후	
대표자명 : 성춘향, 법인 명칭 : 농업회사법인 품종관리센터	

5) 제출일자, 신고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고인(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신고인(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기존에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 전 발급된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자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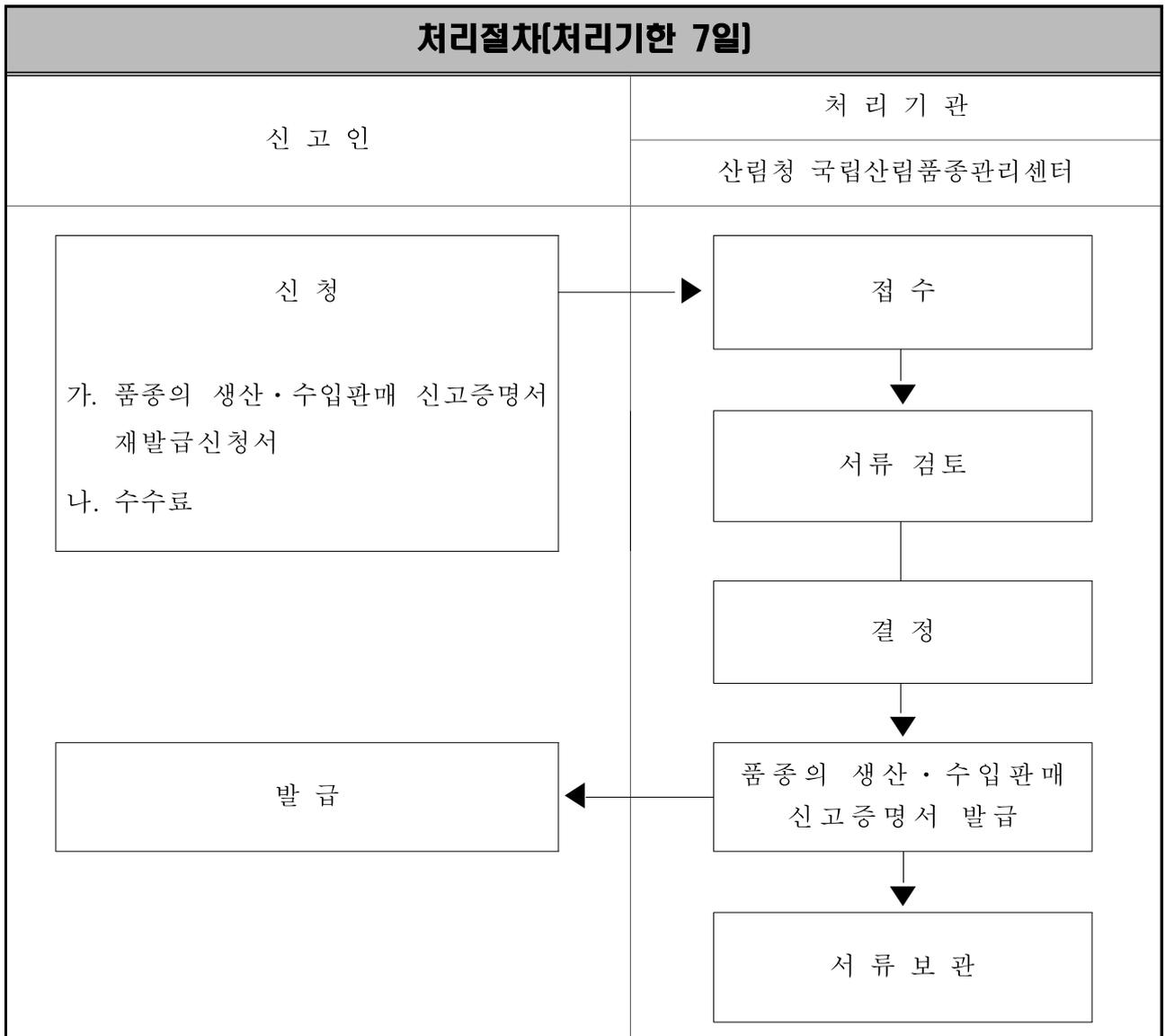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87”쪽)을 참고하면 된다.

3.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나. 수수료”를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처리 절차



가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1)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2)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일	3)
-----------	---------------------	--------------------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4)
---------------	----

재발급 사유	5)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6)
-----------------------------------	----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4) 수수료 5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 신고인 : 각 란의 사항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신고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2) 대리인 : 각 란의 사항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대리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3) 사건의 표시 : 재발급하려는 정보에 대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란에는 기존에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상단에 표기된 신고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09-06-0001-4000-12” 등]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기존에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학명 및 일반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학명 : *Juglans regia* L. 일반명 : 호두나무), (학명 : *Juglans regia* L. 일반명: 호두나무)]

○ “품종의 명칭”란에는 기존에 발급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4)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란에는 재발급받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낡아서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어야 한다.

5)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란에는 재발급받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낡아서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6) 제출일자, 신고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고인(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신고인(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한다.

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품종당 500원이며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89”쪽을 참고).

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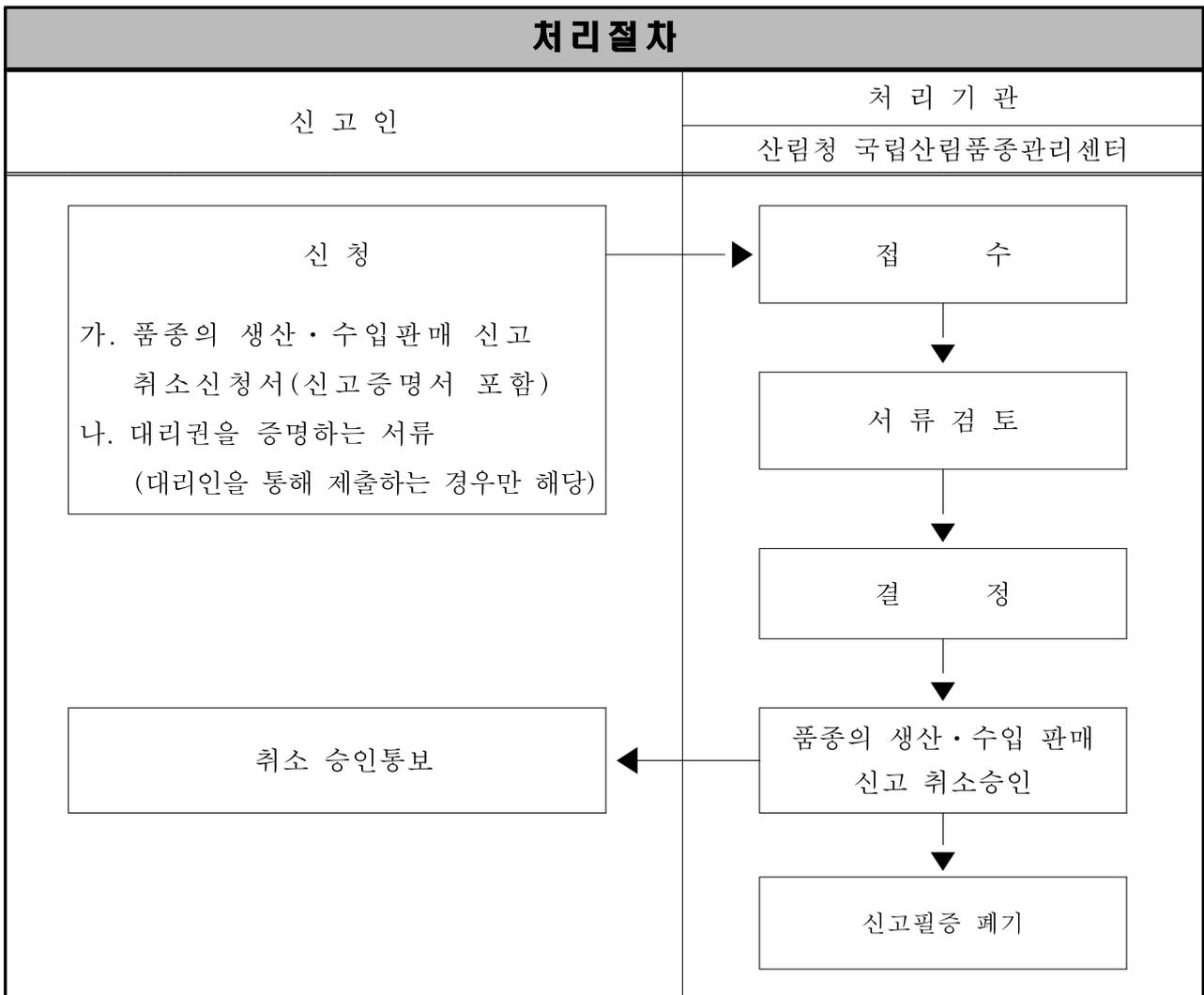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87”쪽)을 참고하면 된다.

4.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취소

□ 「종자관리요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종자관리요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자가 직접 폐업,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취소신청서(신고증명서 포함)”,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를 구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신고자 신청에 의한 산림분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취소 처리 절차



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1) **신청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신고인 기입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

2) **대리인** : 각 란의 사항은 상기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의 대리인 기입방법과 동일하다.

3) **사건의 표시** : 취소 신청하려는 정보에 대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란에는 취소하려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상단에 표기된 신고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시 - “09-06-0001-4000-12” 등]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일자”란에는 취소하려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하단에 표기된 발급된 일자를 적어야 한다.

[예시 - 2017년 1월 1일, 2017. 1. 1 등]

○ “작물명”란에는 취소하려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작물명을 적어야 한다.

[예시 - 호두나무, 밤나무 등]

○ “품종 명칭”란에는 취소하려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품종명칭을 적어야 한다.

[예시 - 엘808(L808), 관헤이하오(Guan He Yi Hao) 등]

4) 취소 사유

“취소 사유”란에는 신청인(대리자)이 신고를 취소하는 구체적인 사유(폐업, 개인 사정 등)를 기재해야 한다.

5) 제출일자, 신청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

- 서류를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 신청인(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을 날인 한다.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관련 서류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고인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87”쪽 예시를 참고).

Ⅶ. 품질 표시

1.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 「종자산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국가보증 대상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인 사료용이 아닌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의 품종을 말하며 산림작물은 아직 해당 없음.)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의 각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자체보증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 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 자체보증이라 함은 고품질 종자 유통·보급을 통한 임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의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의 품질을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유통 종자의 품질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다 음 -

품질표시 사항

- ①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 ②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
- ③ 품종의 명칭
- ④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을 표시)
- ⑤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 ⑥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⑦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 ⑧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
- ⑨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

- ⑩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
- ⑪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한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에 따라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아래와 같이 부착해야 한다.)

※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또한,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크기는 최소 10×3cm(가로×세로) 이상으로 한다.

(앞면)

규격묘의 품질표시					
①작 물 의 류		②품 종 명		③대 목 명	
④업 체 명 (종 자 업 등록번호)		⑤품종생산· 판매신고 번 호		⑥생산년도	
⑦묘 목 량 수 량		⑧수 입 년 월 일		⑨수입자명	
⑩주요병해충 유 무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 ⑫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예시 >



Ⅷ.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에 관한 사항(종자산업법 제54조)

□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5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행위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보증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6.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8.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1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법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쟁 종자시료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과태료에 관한 사항(종자산업법 제56조)

□ 과태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유통조사를 위한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종자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2.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10	30	50	7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사.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IX. 각종 서식

1. 종자 수입요건확인(신청서)

종자 수입요건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확인번호	
③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주소 - 성명	⑥ 원산지 :		
	⑦ 선적항 :		
	⑧ 가격조건 :		
④ 위탁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주소 - 성명	⑨ 선적일 :		
	⑩ 도착예정일 :		
	⑪ B/L번호 :		
⑤ 수출자(송하인) :	⑫ 유효기간 :		
● 품목(란번호/총란수)			
⑬ HS부호		⑭ 용도	
⑮ 거래품명		⑯ 수량 (단위)	()
⑰ 금액 (단위)	()	⑱ 중량 (단위)	()
⑲ 작물 및 품종	⑳수량(단위)	㉑중량(단위)	㉒금액()
⑳ 승인조건			
위 종자에 대해 종자관리요강 제3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수입 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인)			
위 종자는 종자관리요강 제30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가능 품종임을 확인합니다. 20 종자수입 요건확인기관의 장 (인)			

2.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품종의 특성 및 육성과정, 사진 포함)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상호 및 성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전화번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년 월 일 수입하는 종자(거래품명 : , 작물명 : , 품종명 :)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이 종균을 유·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도착 예정연월일, 거래품명(거래품명, 작물명, 품종명) 기재

1. 용 도 : 시험용 · 연구용 · 자가소비용 · 기타() * 해당사항 체크

2. 수입종자 사용계획

종균사용자	시험·연구·재배 장소	전화번호	재배면적(m ²)	소요량
합 계				

※ 상기 수입종자사용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1.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용의 경우에 한함) 1부.
2.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부.
3. 품종사진 1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 품종의 특성

※ 배양기간 · 버섯의 형태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품종의 육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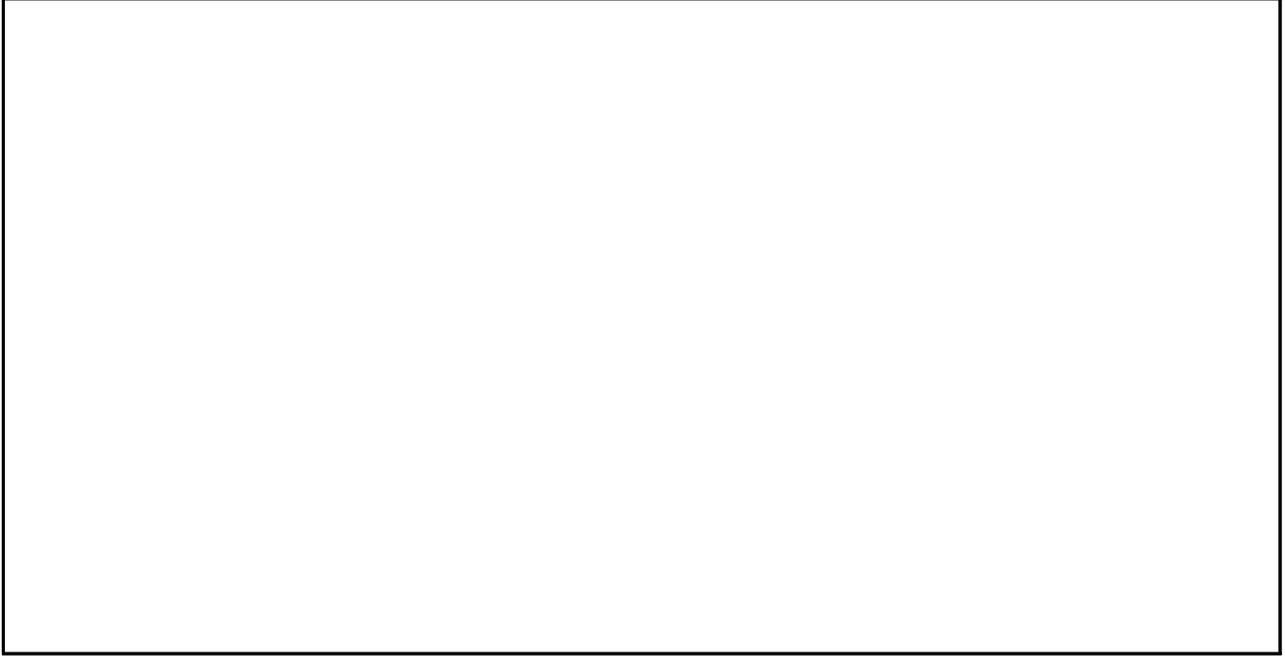
※ 품종의 육성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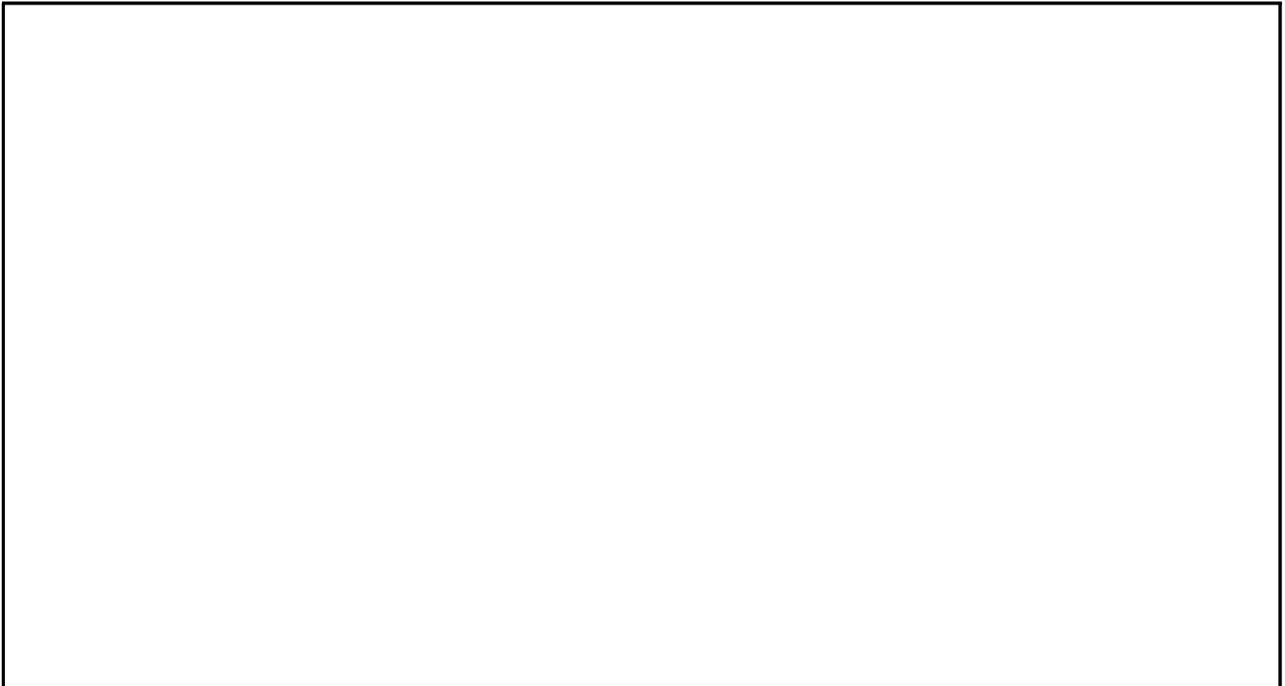
- 접종배지의 모균주(부모 품종)
- 접종배지의 조성성분(툽밥 80%+밀기울 20% 등)
- 툽밥배지 제조 지역 및 국가 등

품 종 사 진

1. 근경사진



2. 원경사진



※ 특성발현이 잘 나타난 상태 촬영(가장 많이 생육된 장면)

3.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서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수입적응성 확인대상품종	⑥ 품 종 명 칭	⑦ 육 성 자	
	⑧ 등 재 번 호	⑨ 등 재 일 자	
<p>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p> <p>농림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귀하</p>			

4.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내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육성자의 성명	
	품종의 주요 특성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법인 귀하
 또는 단체의 장

첨부서류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1부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 :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5.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 도입배경

2. 품종특성

① 작물명칭		② 품종명칭	
③ 재배형태			
④ 번 호	⑤ 특 성	⑥ 표 현 형 태	⑦ 적 요
⑧ 도입지역			

3. 시험수행 방향

가. 공시품종

구분	식별번호 ¹⁾	생산자	생산국가	비고
공시품종				
대조품종				

¹⁾출원번호,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 식별 가능한 번호 기재

나. 재배개요

1) 시험장소 :

2) 특성조사 시기 :

3) 재배법

- 재배방법 :
- 시료형태 :
- 정식시기 :

- 시료주수 :
- 재식거리 :
- 시비량 :

다. 시험구 배치 :

라. 조사항목 :

마. 월별 작업계획

월 별																		
작업내용																		

바. 주요 작업내용

작업내용	세 부 사 항

사. 시기별 특성조사 계획

아. 기타 사항

※ 참고 :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을 위하여 재배 상 특별히 유의할 관리사항 기재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내용

1. 시험자 : (회사명)
2. 시험담당자 성명 :
3. 작물명 :
4. 품종명 :
5. 수입선 : 육성회사명(국가명)
6. 수입목적 : (이 품종을 특히 수입 보급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을 기입)
7. 품종특성의 설명 : (적응성시험 성적에 의거 주요 실용적 특성을 명료하게 기입)
8. 재배작형 및 재배상 특히 유의할 사항
9. 적응성시험 성적
 - 가. 시비량
 - 나. 병충해방제
 - 다. 기상개요
 - 라. 생육상황
 - 마. 시험성적 [특성조사표]

번호	특 성	표현형태	공시품종		대조품종	
			계급	실측치	계급	실측치
1 ●	대선형성 유무	없다 있다				

※ 기재요령 : 질적형질의 경우는 계급을 기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계급 또는 측정된 실측치를 기재한다.

바. 첨부자료

- 특성별 사진 및 사진에 대한 내용기재

8. **확약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확 약 서

신청인(대리인) 성명 :

주 소 :

작물명 :

품종명 :

위 본인은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 세부실시요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에 필요한 종자시료를 시험자의 요청시 지체없이 제출하며, 재배시험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센터장이 정한 기간 내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재배시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고인 : (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9.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록 신청서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관리품목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버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 사진 1장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10. 종자업 등록신청서

종자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12. [종자업, 육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육묘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 소	
사건의 표시	<input type="checkbox"/> 종자업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육묘업	<input type="checkbox"/> 종자업 등록일 <input type="checkbox"/> 육묘업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13.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법인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육성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대리인)

산 립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합니다)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p> <p>전자 : 품종당 2만원 서면 : 품종당 3만원</p> <p>※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합니다.</p>
------	---	---

210mm×297mm[백상지 80g/㎡]

14.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료 제출 약속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료 제출 약속서

신고인 성명 주 소 (법인명칭)	
작 물 명	
품 종 명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에 대한 종자시료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기 품종의 종자시료는 묘목 또는 영양체에 해당되므로 시료를 자체 보관하고, 귀 기관에서 종자시료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15.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내용 [] 대표자명 [] 법인 명칭 []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종자산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16.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일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재발급 사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00원
------	----	-------------

작성방법

1. "재발급 사유"란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8. 수수료 면제신청서

수수료 면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제대상 수수료

면제사유

「종자산업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X. 별표

1. 작물별 보관·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종자시료량은 “종별 세부 시료 제출량”표와 같다.
- 현재까지는 ‘버섯, 초본, 목본’으로만 구분하여 종자를 수령하고 있어 모든 산림작물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최대한 다양한 산림작물의 종자 특성을 반영하여 종자 제출량 근거를 마련함.
- 작물분류(산과수, 조경수, 산채, 야생화, 특용, 버섯, 기타)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묘목은 분류군 특성(주요 형질-과실, 꽃 등) 및 종별 특성(개화·결실 가능 수령 및 증식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종자는 1,000립중×2 (발아율을 평균 50%로 설정하고 2배를 제출받고자 함.)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대립종은 수량으로 정하였다.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작물은 “분류 외 작물”로 규정하고 별도 기준을 정하였음.

□ 종자(원균, 묘목)시료 제출방법

1. 표고버섯 원균

- 제출시기 : 매년 3월 이전
- 제출방법
 - 시험관 3개 또는 샬레 5개(접종 후 균사 생장을 확인 후 제출)



2. 묘목

- 제출시기 : 매년 3월 말 이전
- 제출방법
 - 묘본 6주, 각 묘목마다 품질표시(필수 : 작물명, 품종명, 생산년도)
 - 무성번식체(접목, 삽목, 조직배양)는 반드시 묘목으로 제출

3. 종자

- 제출시기 : 5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충실종자 500립 이상 원칙, 품질표시(필수 : 작물명, 품종명, 생산년도)
 - 종별 세부 종자 제출량은 표를 참조할 것.

규격묘 품질표시			
①작물의종류	②품 종 명	③대 목 명	
④종자입의 등록번호	⑤품종의생·판고신	⑥생산년도	
⑦묘목수량	⑧수입년월일	⑨종자입의 등록번호	

□ 종별 세부 시료 제출량

[산과수]

작물	종자 제출량	비고
감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4~6년생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대목(감나무, 고욤나무 등) 명시 종자(대목용 품종)
개암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0립	
고욤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꾸지뽕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다래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3~4년생 삽목묘 또는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g	
대추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5~6년생 접목묘 6주	대목(대추, 뿔대추, 산조인 등) 명시
돌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삽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0g	종자(배나무 대목용 품종)
뜰보리수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뿔대추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종자(대추나무 대목용 품종)
밤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접목묘 6주	
뱀딸기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2년생 이상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2g	
보리수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5g	
복분자딸기	- 산딸기 준용	
뽕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0립	
산돌배	- 돌배나무 준용	
산딸기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g	
산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80g 또는 2000립	
산수유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0g 또는 2,000립	
산초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상수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졸참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청실배	- 돌배나무 준용	
콩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종자(배나무 대목용 품종)
피칸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0립	
호두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0립	대목(호두나무, 가래나무 등) 명시

[조경수]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가문비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g	
가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가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5g	
가침박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개회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계수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고광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0.3g	
골담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곰솔	- 소나무 준용	
구상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굴거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굴참나무	- 상수리나무 준용	
글라우카 가문비	- 가문비나무 준용	
금목서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금사슬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금송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까마귀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꼬리조팝나무	- 조팝나무 준용	
꽃댕강나무	- 땃강나무 준용	
꽃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포트묘 60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팥팥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g	
나무수국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0.5g	
나한송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낙상홍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g	
낙우송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남천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납매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노각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노니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노랑말채나무	- 흰말채나무 준용	
녹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눈향나무	- 향나무 준용	
느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다정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단풍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g	
닭벼슬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담쟁이덩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당단풍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당조팝나무	- 조팝나무 준용	
대왕송	- 소나무 준용	
대왕참나무	- 상수리나무 준용	
댕강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종자 결실이 어려움.

맹맹이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g	
덜꿩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독일가문비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돈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0g	
동백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들메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30g 또는 2,000립	
등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0립	
땅비싸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때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0g 또는 2,000립	
루브라꽃 산딸나무	- 산딸나무 준용	
말오줌때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90g	
매자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멸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메타세콰이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모감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0g 또는 2,000립	
모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목련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대목(목련, 태산목 등) 명시
목서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무늬개키버들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무리카타 아노나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무지개 유카리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물오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물푸레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또는 2000립	
미국산딸나무	- 산딸나무 준용	
미선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또는 2,000립	
바오밥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박태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0g	
반송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배롱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백당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백두산 자작나무	- 자작나무 준용	
백목련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대목(목련, 태산목 등) 명시
백송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벚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0g 또는 2,000립	
병꽃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0.5g	
병아리 꽃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50g 또는 2,000립	
보리밥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복자기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50g 또는 2,000립	
불두화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붉가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붉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붓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0g 또는 2,000립	

비목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비자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비파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사람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0g 또는 2,000립	
사방오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g	
사철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산겨릅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산당화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산딸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0g 또는 2,000립	
산벚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90g	
산수국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0.2g	
산옥매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생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생얼귀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서양측백나무	- 측백나무 준용	
설악눈주목	- 주목 준용	
섬잣나무	- 잣나무 준용	
소귀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소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대목(소나무, 곰솔 등) 명시
수수꽃다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쉬땅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스코폴리움 향나무	- 향나무 준용	
스트로브 잣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싸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g	
아그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안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g	
알베르티아나 가문비나무	- 가문비나무 준용	
영춘화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오리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g	
왕벚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으름덩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5g	
은단풍	- 단풍나무 준용	
은행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이팝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50g 또는 2,000립	
일본매자나무	- 매자나무 준용	
일본복자기	- 복자기 준용	
일본잎갈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0g	
자귀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또는 1,000립	
자목련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0g 또는 2000립	대목(목련, 태산목 등) 명시
자작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g	
자카란다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잣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	
전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전동싸리	- 참싸리 준용	
조팝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g	
죽제비싸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좁쌀담초	- 골담초 준용	
좁목형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좁작살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g	
종가시나무	- 가시나무 준용	
주목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주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죽절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중국단풍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중국붉나무	- 붉나무 준용	
취뽕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70g	
쪽동백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1,000립	
참가시나무	- 가시나무 준용	
참싸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청취땅나무	- 취땅나무 준용	
측백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5g	
층층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철엽수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코랄로텐드론 닭벼슬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코스타리카 담벼슬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쿠쿠이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튜울립나무 (백합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90g	
팔꽃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팔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편백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푸조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0g 또는 2,000립	
풀명자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풍년화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피라칸다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핀참나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적용	
함박꽃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대목(목련, 태산목 등) 명시
향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호랑가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홍단풍나무	- 단풍나무 준용	
화살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황근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황매화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황칠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회양목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회화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300g 또는 2000립	

후박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0g 또는 2000립	
흰말채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흰배롱나무	- 배롱나무 준용	
히어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야생화]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갈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개미취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구절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기린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g	
꽃향유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꿀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뽕의다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뽕의비름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낭아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2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눈개승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딱지꽃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말발도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물레나물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별개미취	- 개미취 준용	
별노랑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부처꽃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비수리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산구절초	- 구절초 준용	
삼지구엽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수염패랭이꽃	- 술패랭이꽃 준용	
술패랭이꽃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시호	- 분류 외 작물 기준 준용	
쑥부쟁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어리병풍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억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여뀌	- 종자 : 건전 종자 200g	
영산홍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20주	
오이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우산나물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원추리	- 묘목 : 특성 발현이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인동덩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2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잔디	- 묘목 : 건전한 뗏장(18×18cm) 20개 - 종자 : 건전 종자 300g	
잔잎바디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g	
진달래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20주	
질경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차풀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큰뽕의비름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g	

큰뻥무	- 분류 외 작물 기준 준용	
할미꽃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산채]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고려영경귀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2년생 이상
고사리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2년생 이상
고추냉이	- 분류 외 작물 기준 준용	
곤달비	- 곰취 준용	
곰취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400g 또는 2000립	2년생 이상
달래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종자(주아) 400g 또는 2000개	1년생 이상
더덕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2년생 이상
머위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2년생 이상
바디나물	- 분류 외 작물 기준 준용	
방아풀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2년생 이상
산마늘	-묘목 :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종자 : 건전 종자 25g	2년생 이상
산미나리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1년생 이상
씀바귀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2년생 이상
참나물	-묘목 :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종자 : 건전 종자 100g	2년생 이상
참취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g	1년생 이상
파드득나물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2년생 이상

[버섯류]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목이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팽나무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송이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잣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털목이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표고버섯	- 건전한 종균 시험관 3개 또는 살레 5개	PDA 배지

[특용]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가시오갈피	- 오갈피나무 준용	
감초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2년생 이상
개똥쭈	- 쭈 준용	
고로쇠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80g	
남오미자	- 오미자 준용	
느릅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9g	
덤불쭈	- 쭈 준용	
돌나물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2년생 이상
두릅나무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5g	3년생 이상
두충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삼목 개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0g 또는 2000립	8년생 이상
둥글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땅두릅	- 두릅나무 준용	
마가목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4g	

만병초	- 묘목 : 당해 개화·결실이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0.7g	
모링가 올리페라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0g	
미역취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30g	2년생 이상
미역취속 (솔리다고)	- 미역취 준용	
봉래죽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2년생 이상
산양삼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50g 또는 2,000립	3년생 이상
쇠무릎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2년생 이상
쑥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2년생 이상
아까시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이 가능하고 건전한 삼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애기두릅나무	- 두릅나무 준용	
어수리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2년생 이상
오갈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20g	
오미자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5g	
웃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20g	
읍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00g	
익모초	- 종자 : 건전 종자 50g	
잔대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2년생 이상
지치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2년생 이상
쪽	- 종자 : 건전 종자 100g	
참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15g	
초피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접목묘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5g	

큰조롱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1년생 이상
하수오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증식 포트묘 60주 - 종자 : 건전 종자 40g	2년생 이상
헛개나무	- 묘목 : 당해 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60g	3년생 이상
황벽나무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 - 종자 : 건전 종자 50g	

[기타]

작물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새	- 종자 : 건전 종자 20g	

[분류 외 작물]

1,000립중	종자 제출 시료량	비고
1g 이하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목본)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 포트묘 60주(초본) - 종자 : 건전 종자 1g	
1~100g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목본)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 포트묘 60주(초본)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중×2g	
100g 이상	- 묘목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체 6주(목본) • 당해 개화·결실 가능하고 건전한 무성 증식 포트묘 60주(초본) - 종자 : 건전 종자 1,000립중×2g 또는 2,000립	

2. 수입요건확인 ·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

구분	대상작물	실시기관
1. 식량작물(13)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채소(18)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한국종자협회
3. 과수<삭제 2010.12.16.>		
4. 화훼<삭제 2004.1.27.>		
5. 벼섯(11)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머들송이, 만가닥벼섯, 상황벼섯	한국종균생산협회
	표고, 목이, 복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6. 약용작물(22)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우슬	한국생약협회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7. 목초·사료 및 녹비작물(29)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룸그라스, 사료용 벼, 사료용 보리, 사료용 콩, 사료용 감자, 사료용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Sorghum×Sudangrass Hybrid), 수수 교잡종 (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콤먼벳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grass×Sudangrass Hybri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인삼(1)	인삼	한국생약협회
9. 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삭제 2016.10.28>		

산림분야 종자업의 이해

발행인 : 김종연

편집자 : 권오웅

작성자 : 장용석, 한무석, 우효진, 김태훈, 최용수, 김제국,
김순자, 박재빈, 황지윤

발행일 : 2017. 1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